발간등록관리번호
KYWA-2018-151-10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안내 매뉴얼

주최기관용

여성가족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참여를 방지하며,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소년, 학부모 등 국민들이 청소년수련활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선택과 참여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Contents

I PART 5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의 이해

1.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란? 6
2. 관련 용어 해설 6
3. 주요 내용 7
4. 신고 및 의무인증 대상 8
5. 추진 주체별 수행 역할 10

II PART 13

청소년수련활동 신고하기

1. 신고 절차 14
2. 구비 서류 16

III PART 23

신고 수리 후 확인사항

1. 활동주최자의 의무사항 24
2. 위반 시 벌칙사항 27

IV PART 31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신고 관련) 이용 안내

1.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32
2. 신고등록 (보완요청 / 신고수리 / 반려) 40
3. 진행상태 확인 69
4. 신고 수리 후 모집활동 70
5. 신고 수리 후 변경신고 71

별첨 77

※ 별 첨

1. 자주하는 질문 및 주요 사례 78
2.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관련 법령 105
3. 청소년 인원별 지도자 배치기준 127
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서류 작성 예시 (운영계획서) 136
5.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담당자 연락처 167

PART

I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의 이해

1.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란?
2. 관련 용어 해설
3. 주요 내용
4. 신고 및 의무인증 대상
5. 추진 주체별 수행 역할

1.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www.youth.go.kr)에 공개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용어 해설

구 분	법령근거	내 용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3호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7호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 · 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 · 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8호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청소년 수련거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6호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주요내용

구 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신고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 · 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	
신고 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서류 제출 (신고 수리 전 모집활동 금지)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일체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해당 활동)
	※ 단, 직접 기획 · 주최, 모집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신고한 수련활동에 단순 참가만 하는 경우는 신고 제외 대상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 주최 · 모집하는 기관에서 신고하여야 함)	
신고 제외대상	•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고위험활동이 없고, 참가 청소년 150명이하의 비숙박형 수련활동	

4. 신고 및 의무인증 대상

구 분		신고대상	의무인증대상
영리법인, 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청소년수련시설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청소년단체(6개단체*)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청소년연맹, 4에이치활동, 청소년적십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회원대상 실시의 경우)	×	×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비회원대상 실시의 경우)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회원대상 실시의 경우)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비회원대상 실시의 경우)	×	○
종교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보호자*와 함께하는 활동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부모)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다른 법률의 지도 · 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 법인 · 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 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일 경우 **의무인증** 대상
- 참가자 모집 혹은 활동개시 **45일 이전**에 기준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신청 접수
  ※ 2018.9.5.에 시작되는 활동의 경우 최소 **45일 전** 2018.7.22.전 인증 신청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신청, 컨설팅 등 연락처는 167page 참고

〈위험도가 높은 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구 분	프 로 그 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클라이밍(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집라인(Zip-line),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 · 기구 ·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5. 추진 주체별 수행 역할

구 분	주요 담당업무
여성가족부	– 제도 관련 법령 · 제도 개선 총괄 – 제도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검토 확인 보완 요청 등
시 · 군 · 구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접수 및 관리 –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 –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 – 신고제 관련 위반자 확인 규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제도 안내 및 홍보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 및 정보공개사이트(www.youth.go.kr) 운영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제도 안내 및 홍보, 컨설팅 – 신고 현황 이행실태 수시 점검(모니터링 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제출 – 신고 된 프로그램 수리 후 의무사항 준수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 조치 • 관련 정보의 표시 · 고지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활동 실시 3일 전)

※ 신고 관련 컨설팅 등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락처는 167page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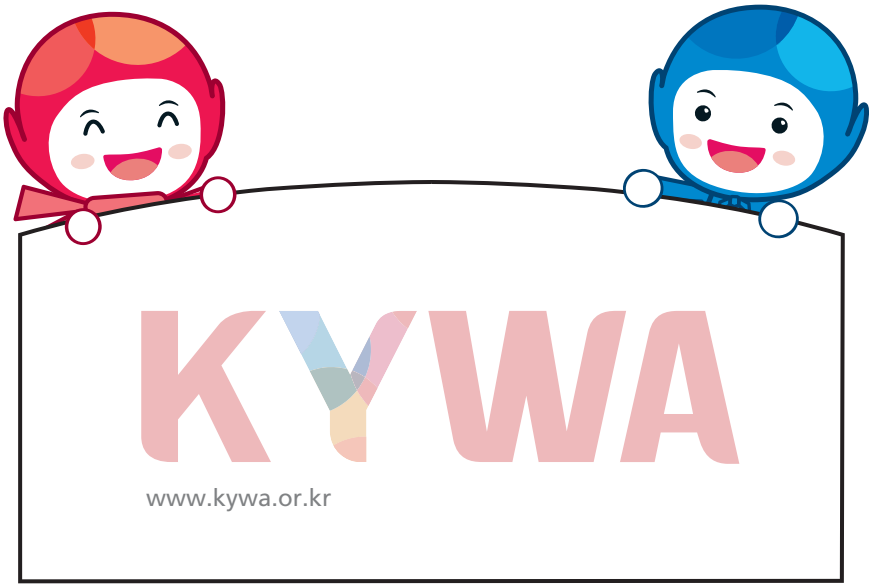
KYWA
www.kywa.or.kr

PART

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하기

1. 신고 절차
2. 구비 서류

1. 신고 · 수리절차

1) 주최자는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처리기관(주최자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

(참가자 모집 14일 전)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www.youth.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리기관(주최자 소재지 시군구) 자동으로 배정되어 접수됨

• 오프라인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처리기관(주최자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이메일 등)

※ 신고 접수 전 해당 지역의 시 ·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컨설팅 요청 가능(167page)

☞ 관련조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2) 처리기관에서는 접수 후, 구비서류 점검사항 확인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하여 신고 수리

– 운영계획서, 보험증권 등 주최자가 신고한 사항을 행정청(시 · 군 · 구)에서 요건 검토

※ 신고요건이 미비할 경우 처리기관(시 · 군 · 구)에서 보완요청 또는 반려됨으로 주최자는 보완 · 반려 시 해당사항 (반려사유 등)을 검토 후 기한 내 보완 · 재신고하여야 함

※ 주최자는 신고 접수 후 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처리기관(지자체)에 확인 요망

3) 신고 수리 후 수련활동 참가자 모집 및 계약 진행

※모집활동을 바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처리기간(반려 · 보완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청(시 · 군 · 구)에 사전 신고서류 제출 필요

☞ 관련조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2항

4) 모집 및 계약 시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신고 · 인증에 관한 사항을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 · 고지

☞ 관련조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5) 신고 수리된 프로그램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관련 서류를 해당 처리기관에 제출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 (프로그램) 중요 프로그램이 아니며,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분의1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 (시설 및 장비) 신고 수리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
- (지도자) 신고 수리된 지도자와 유사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관련조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6) 활동 실시 전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 건강상태 확인서(별지 제6호 또는 7호 서식)를 제출받아 확인

☞ 관련조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

7) 신고 수리된 내용 중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여성가족부에서 시 · 군 · 구 통보) 해당 주최자는 시 · 군 · 구에서 통보받은 보완 사항을 검토 · 보완하여 시 · 군 · 구에 관련사항 등을 제출

☞ 관련조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6항 및 제7항

2. 구비 서류

1)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시행규칙 별표 1 운영기준 준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운영계획서 제출 제외

3)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4)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험 증권 등 보험 가입 증빙 서류 확인
  (보험가입청약서 등 가입예정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보험 상품의 종류는 무관하지만 법정 금액 이상 가입
  ※ 법정 보험 보장금액 기준 : 사망 8천만원, 부상 최대 1천5백만원, 후유장애 최대 8천만원

▶ 관련조항 : (구비서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보 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주최자	상호명(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수련활동명*	기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참가인원
		1인당 참가비
	주요 이동경로 및 수단	인증수련활동 여부
		숙박/야영 장소
	변경 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제1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 시>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2.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3.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류	<계획변경 시> 1. 변경사유서 2. 변경 내용 관련 서류 (*청소년수련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운영계획서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방법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직책 (지도 역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담당업무	자격증	최근 주요경력	근무 시작 연월일	상근 여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활동 세부 내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주최자(기관)명			프로그램명			
주최자 (기관)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활동 기간	부터 까지		
	담당자			[ ] 당일 [ ] 단기(2~3일) [ ] 중기(4~6일) [ ] 장기(7일이상)		
인증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	프로그램 위탁 여부	보험명	보험금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주체		[ ] 청소년수련관 [ ] 청소년수련원 [ ] 청소년문화의 집 [ ] 청소년특화시설 [ ] 청소년야영장 [ ] 유스호스텔 [ ] 영리법인 [ ] 기타				
활동장소		형태	선택	명칭	주소	
		청소년시설	[ ]			
		청소년이용시설	[ ]			
		공공기관	[ ]			
		민간기관	[ ]			
		야외	[ ]			
		기타	[ ]			
참가 대상	구분	학교단체	청소년단체	개별모집	장애 청소년	그 밖의 청소년	기타
	인원수						
활동 규모	구분	개별 활동	소집단활동 (50명 미만)	중집단활동 (50명 이상~150명 미만)	대집단활동 (150명 이상)		
	인원수						
프로그램 형태		[ ]숙박형 [ ]비숙박형					
프로그램 구성		[ ] 단위활동 프로그램 [ ] 주제연속형 프로그램 [ ] 주제통합형프로그램 [ ] 종합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영역		[ ] 건강보건 [ ] 과학정보 [ ] 교류 [ ] 모험개척 [ ] 문화예술 [ ] 봉사협력 [ ] 진로탐구 [ ] 환경보존 [ ] 역사탐방 [ ] 자기계발 [ ] 기타					
프로그램 내용						
지도인력 (프로그램투입)		구분	계	전문지도자	일반지도자	보조지도자
		인원수				
예산 형태	구분	자체예산		보조금	지원금	참가비(1인당)
	비율(%)					
프로그램 위탁 운영 여부		위탁기관명				
		위탁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인증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여부(인증수련활동은 인증 번호 기재) **- 위험도가 높은 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 및 별표 7에 따른 수상활동·항공활동·산악활동·장거리걷기활동·그 밖의 활동(유해성 물질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프로그램 위탁 여부: 주최자 외의 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 **- 프로그램 형태** • 숙박형: 참가자의 주거지를 떠나 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 · 야영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 · 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 • 비숙박형: 실시하는 날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 **- 프로그램 구성** • 단위활동 프로그램: 어떤 하나의 주제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활동 프로그램,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할 특정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 • 주제연속형 프로그램: 한 주제를 여러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지속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활동프로그램이 단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데 모아서 이루어진 활동프로그램 • 주제통합형 프로그램: 한 주제에서 세분화된 여러 활동이나 비슷한 성격의 활동들을 모아 한 체계 속에서 적절하게 연결하여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서 구성한 활동 • 종합형 프로그램: 부문별 프로그램이 각각 고유한 목표와 성격을 유지하면서 어떤 연결 원칙이나 공통적인 문제, 상호 관심 영역에서 그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조합한 총괄성을 가진 프로그램 **- 프로그램 영역** •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 · 음주 · 약물 · 비만 예방활동, 안전 · 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등 •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 이해활동, 세계문화 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 모험개척활동: 탐사 · 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림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 봉사협력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활동 등 • 진로탐구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체험,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등 •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 · 시설 보존활동 등 • 역사탐방활동: 문화재 답사, 역사유적지 탐방, 역사테마체험활동 등 • 자기계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활동,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 프로그램 내용: 주요일정, 단위프로그램 개요 및 해당 프로그램의 신고 · 등록 ·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 등** **- 지도인력** • 전문지도자: 청소년지도사 · 상담사 자격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문 자격 및 지도 경력을 보유한 지도자 • 일반지도자: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해당 프로그램 지도에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지도자 • 보조지도자: 해당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임시지도자

[별표 1] <개정 2014.7.2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안전 확보

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지도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자(지도 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기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휴식 및 영양공급,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 · 장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 ·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음주 · 흡연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고, 지도 인력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청소년에게 정신적 · 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 · 등록 · 허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신고· 등록 · 허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 지도자 자격 및 경력, 인증수련활동 여부, 가입 보험 종류 및 약관, 사목에 따른 신고 · 등록 · 허가 여부, 안전관리 대책 등의 정보를 주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PART

III

신고 수리 후 확인사항

1. 활동주최자의 의무사항
2. 위반 시 벌칙사항

1. 활동주최자의 의무사항

1) 신고 수리 전 참가자 모집 금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계약 등)을 할 수 없음

2)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 표시 · 고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5)

– 모집 및 계약 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 · 고지

3) 보완사항 통보를 받은 경우 보완사항 이행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 신고 수리 후 검토과정에서 여성가족부 및 해당지자체에서 통보받은 보완사항 이행

4) 참가 청소년 건강상태 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활동 실시 전 참가 청소년들의 건강진단서 또는 별지 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 (확인 대상은 참가 청소년 전체)

5) 활동 참여 청소년 안전 교육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6) 활동 중 참가자 의료조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

– 참가 청소년에게 질병 ·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조치를 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7.21>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1. 참가자명 :

2. 성별 :

3.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번호	주최자(기관명)	청소년수련활동명

4. 건강상태(질병, 장애, 특이체질 등)

증상	요청사항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4.7.21>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1.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번호	주최자(기관명)	청소년수련활동명

2. 건강상태 (질병, 장애, 특이체질 등)

연번	참가자명	성별	내 용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2. 위반 시 벌칙사항

1) 법령 위반 사항

①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신고가 수리되기 전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

③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 ·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 시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④ 모집활동 및 계약 시 인증 여부,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의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⑤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⑥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⑦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별표 5] 〈개정 2014.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 정도가 중대하여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제1호	200만원
다.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제2호	200만원
라.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2항제3호	200만원
마. 법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2항제4호	200만원
바.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제5호	200만원
사.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 제2항제6호	200만원
아.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2항제7호	200만원
자.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제8호	200만원
차.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1) 법 제21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법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제12조에 따른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법 제72조 제2항제9호	200만원
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2항제10호	200만원
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제11호	200만원
파.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제12호	100만원
하.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2호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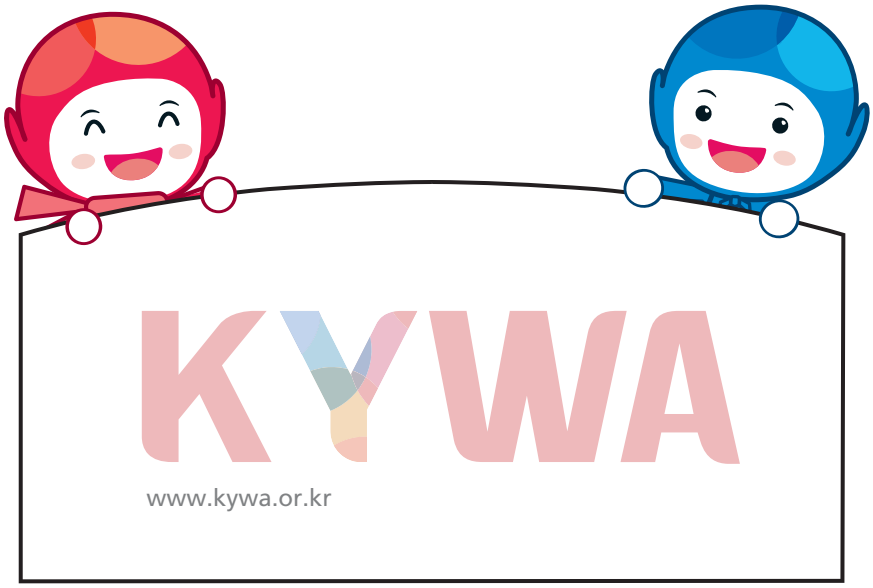
KYWA
www.kywa.or.kr

PART

Ⅳ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신고 관련) 이용 안내

1.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2. 신고등록
3. 진행상태 확인
4. 신고 수리 후 모집활동
6. 신고 수리 후 변경신고 (필요 시)

1.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STEP 1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시스템 접속

▶ 사이트 주소 : www.youth.go.kr

▶ e-청소년 메인화면

– 오른쪽 위 [업무지원서비스] 클릭 하면 아래 업무지원서비스 화면 전환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신고 관련 업무 등) 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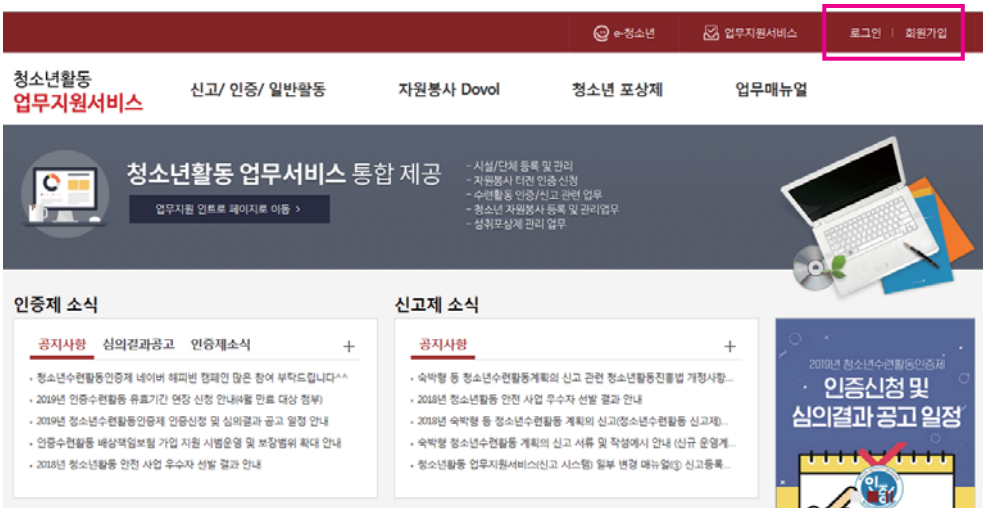

– 기존회원 일 경우 오른쪽 위 [로그인], 신규 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클릭

STEP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시스템 회원가입

▶ 오른쪽 위 [회원가입] 클릭

※ e청소년(youth.go.kr) 통합ID 보유시 재 가입 불필요

▶ 회원가입 페이지 이동

– 1단계 [약관동의] 후 2단계 [회원유형 선택] 으로 이동

– 반드시 [일반회원] 회원가입 선택 (신고주최 담당자, 일반/학부모, 처리기관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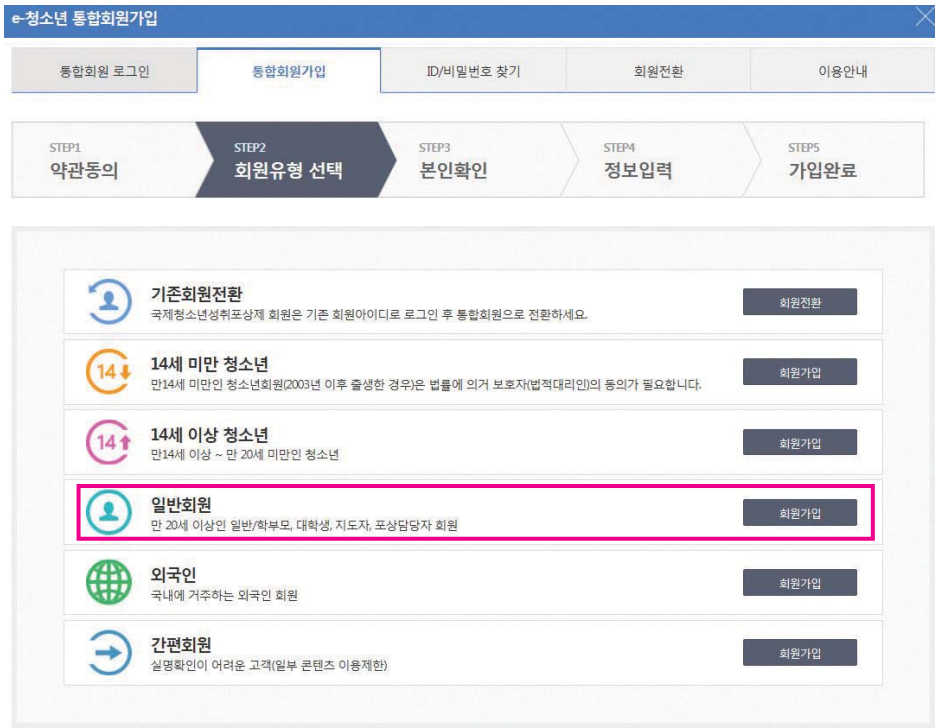

– [본인확인](주민번호, 휴대폰 등) 후 [인증하기]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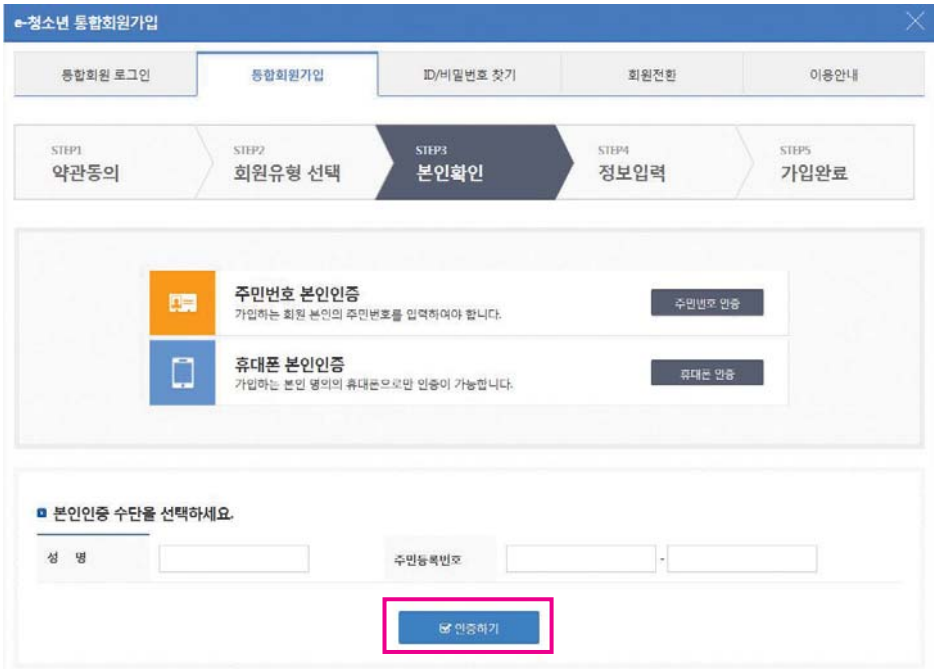

– [정보입력] (기본정보 및 부가정보 입력) 후 작성완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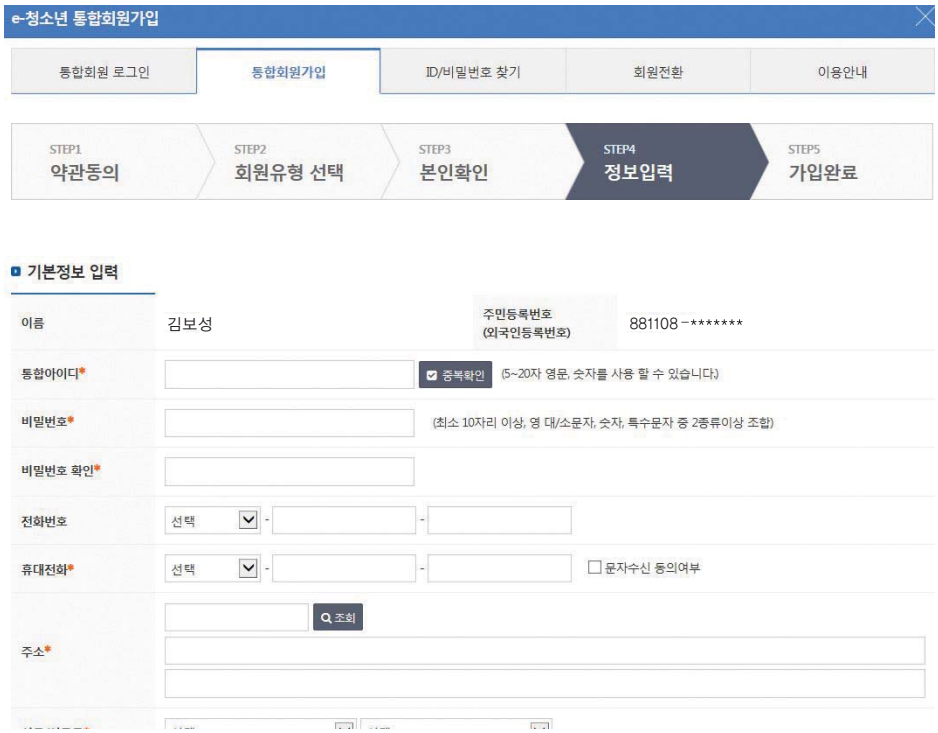

– [가입완료] 후 신고등록 등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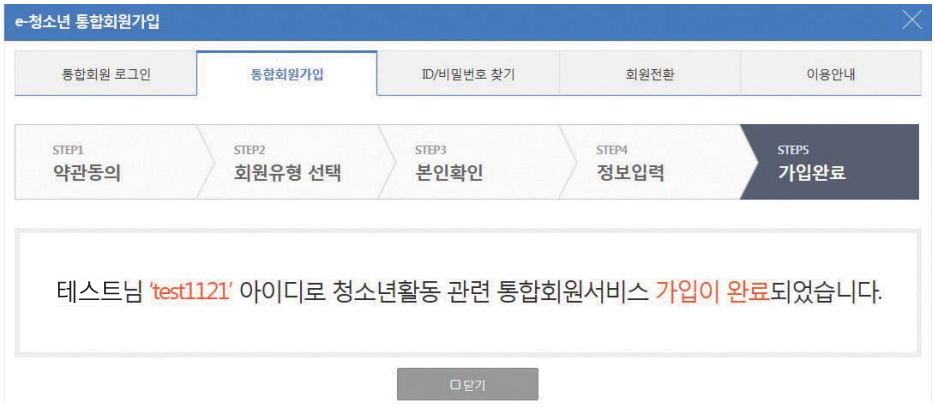

STEP 3 프로그램 주최자 등록

▶ 로그인 후 [신고/인증/일반활동] 의 [시설단체 관리] 클릭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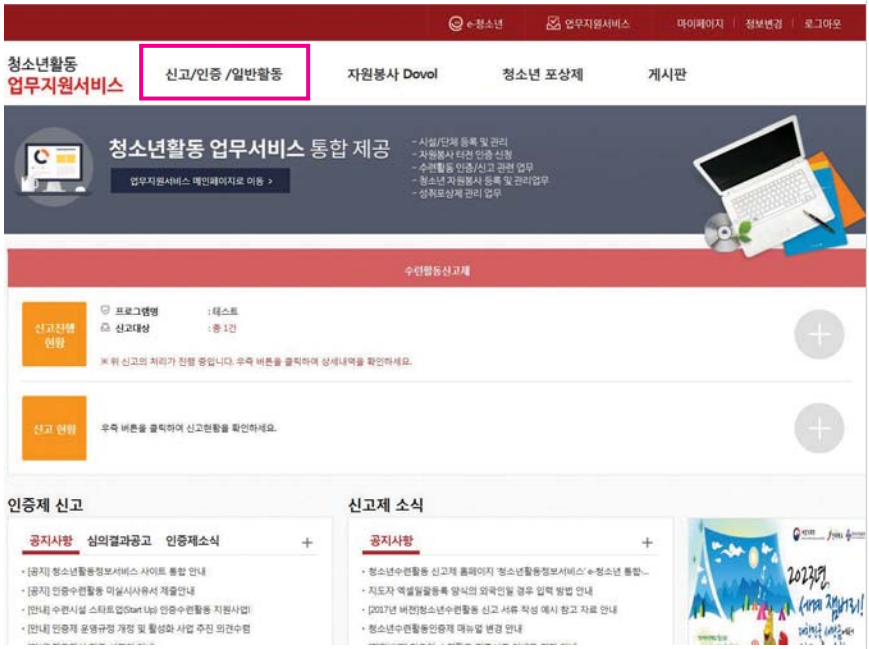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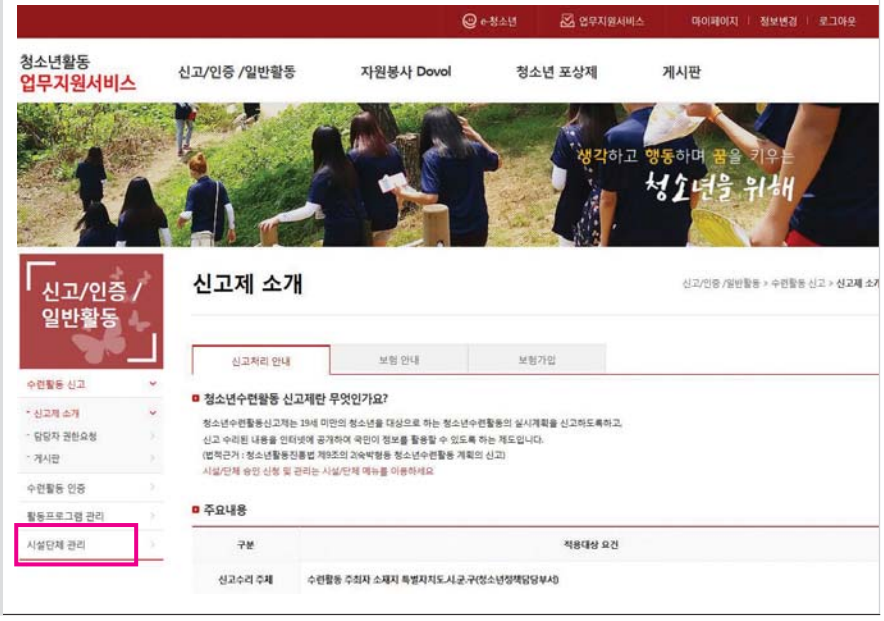

▶ [시설단체 담당자 등록요청] 클릭 → 사업자번호, 기관명 입력 후 [검색] 클릭

3-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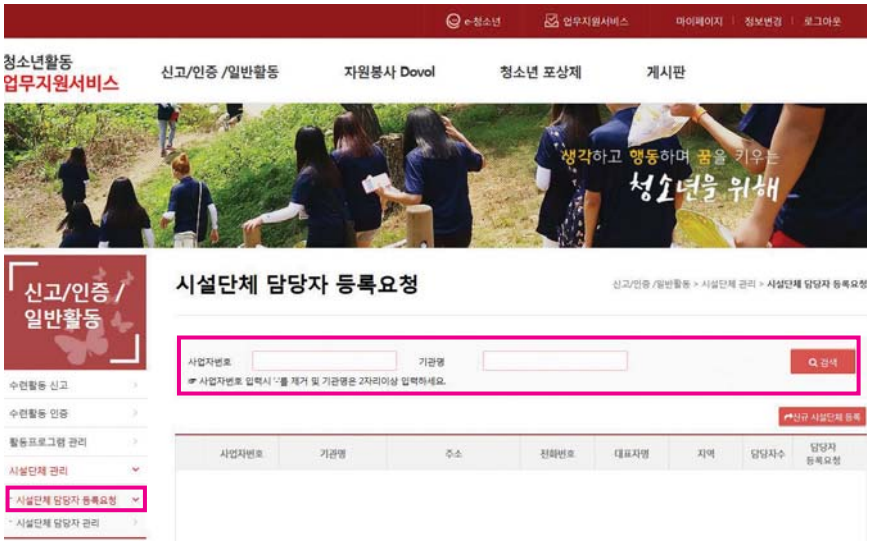

▶ 기존 등록 된 시설단체일 경우 [등록요청] 클릭

- 등록된 시설단체일 경우 아래와 같은 목록이 뜨며 기관등록 불필요
- 요청에 따른 승인은 해당기관의 대표담당자가 진행, 승인 완료 후 신고등록 가능

3-1-1 단계

- 등록요청 후 안내창을 확인하여 승인요청 : 해당 기관의 대표 승인 담당자 승인 필요

3-1-2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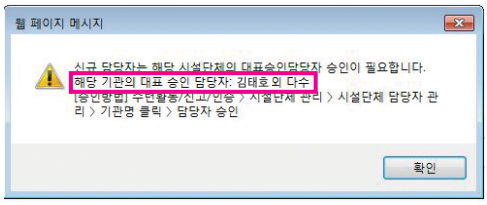

▶ 기존 등록 된 시설단체 담당자 등록요청 승인 방법

– 대표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아이디 로그인 후 [시설단체 관리] → [시설단체 담당자 관리] → [기관명] 클릭

3-1-3 단계

– [변경/승인] 클릭

3-1-4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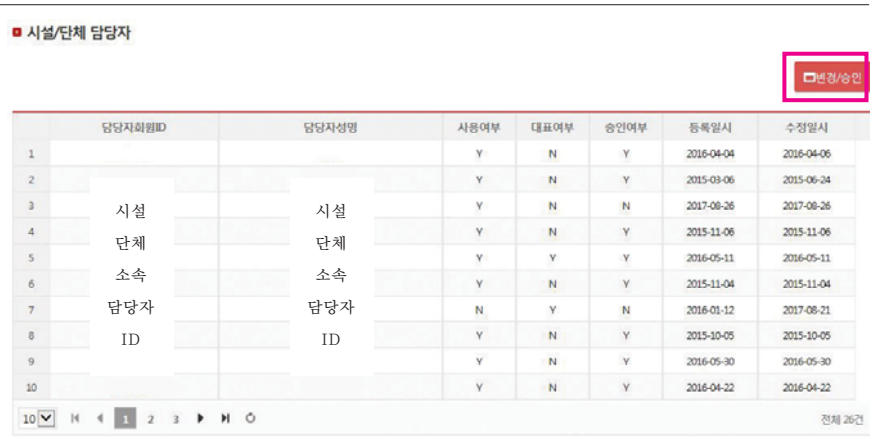

– 요청이 들어온 담당자 확인 및 사용여부/대표여부/승인여부 변경 후 [저장] 클릭

※ [삭제] 클릭 시 **등록요청 내역 삭제**

3-1-5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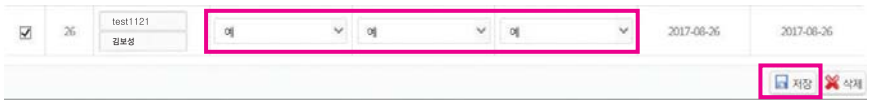

↑ 사용여부 / ↑ 대표여부 / ↑ 승인여부 확인 후 "저장" 클릭
*[승인여부]가 '예'로 되어있어야 업무 가능
*[대표여부]가 '예'로 되어있는 인원이 담당자 등록요청에 대한 승인 가능

▶ **신규 시설단체일 경우 [신규 시설단체 등록] 클릭(수정필요)**

- 필수 정보 등 입력 후 [등록요청] 클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승인완료 후 신고등록 가능

※ 등록 후 문의 · 승인요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IT전략부(☎ 02-330-283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인증부(☎ 02-330-2850)

3-2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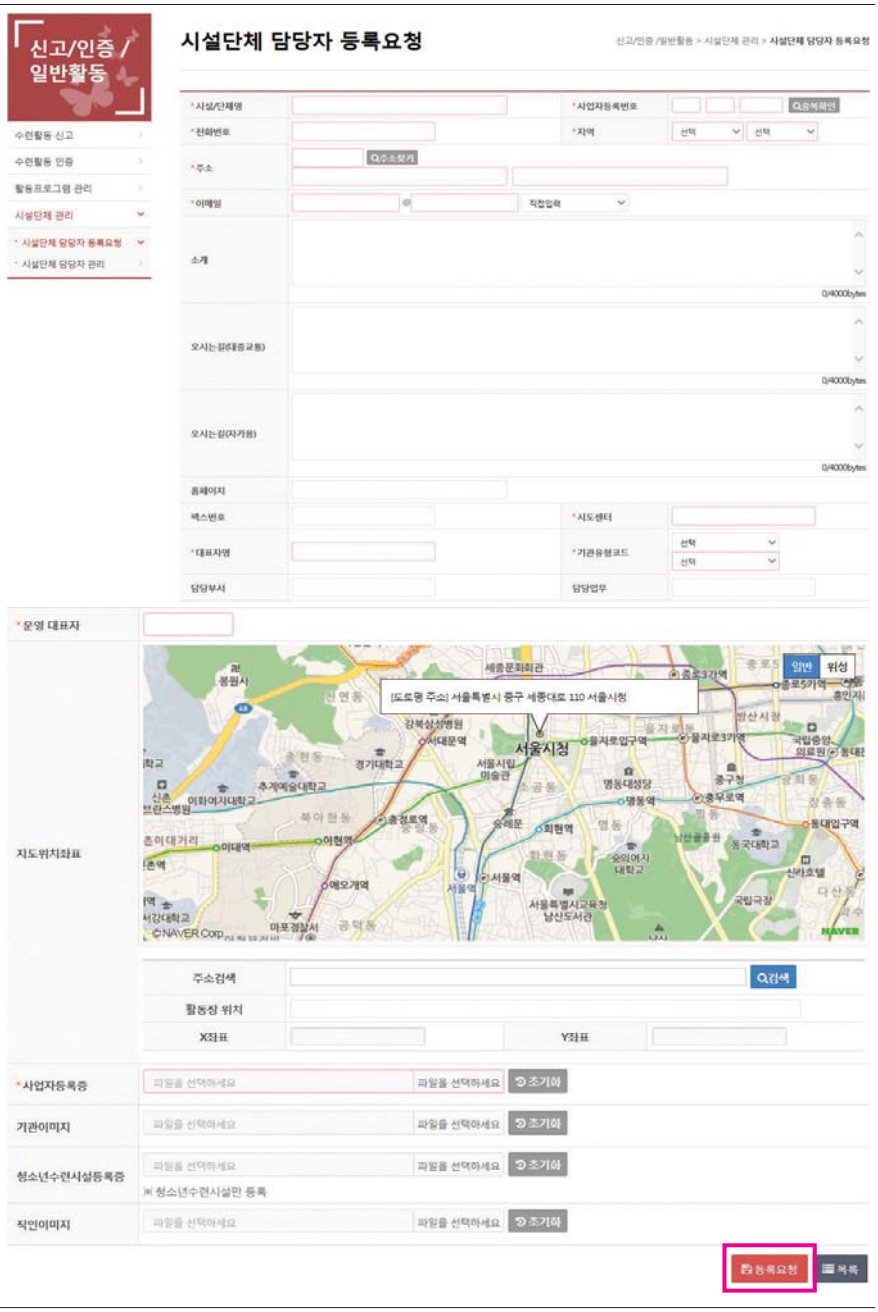

2. 신고등록

STEP 1 신고등록 1단계 (계획신고서)

❖ **주최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리기관(주최자 소재지 시 · 군 · 구)에 신고서 제출 (모집 14일 전)**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시스템(www.youth.go.kr–업무지원 서비스)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해당 시 · 군 · 구에 자동으로 매칭 되어 온라인 접수가 완료 됨
- 오프라인(서면) 접수 인 경우 필요 서류를 해당 시 · 군 · 구에 제출

→ 검토 후 신고수리가 되면 시 · 군 · 구 담당자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

❖ **처리기관에서는 접수 후,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점검사항 확인 (행정청은 신고서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주최자의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명
온라인접수 시 자동생성	1)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2)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3)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온라인접수 시 별도 파일첨부	4)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 시행규칙 별표1 운영기준을 포함한 계획서(시행규칙 제1조2)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제외
	5) 보험 가입 사실 증빙 서류 • 보험증권 등 법 제25조에 따른 증빙서류 • 보험가입 청약서 등 보험가입 전 계획 서류 등은 불가 • 보험 상품(‘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등)은 무관하나 법정금액 이상 가입이 증빙 되어야 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13조 : 사망 시 8천 이상 등)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시스템이용 Tip

◈ 신고 기한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모집 14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 제출

※ 단,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 일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함(의무 인증)

◈ (작성 단계) 총 3단계

- 1단계 :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 2단계 :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 3단계 : 청소년수련활동 세부 내역서

※ 각 해당항목의 ? 아이콘 클릭 시 항목별 **"작성요령"** 확인가능

※ 1, 2단계의 경우 **[다음 단계로]** 버튼을 눌러야 임시저장 가능

※ 작성 중 이전 단계로 가고 싶을 경우, 현재 작성중인 페이지 **임시저장(다음 단계로 버튼 클릭)** 후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확인 가능**(처리상태: (변경)신고 작성중)

◈ (신고 · 변경신고 접수)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변경)신고 접수]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접수 완료 됨. [작성완료] 상태는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

◈ 신고 접수 이후 처리 방법

- **보완요청 : [주최자 신고목록] – [신고프로그램명]** 클릭 – 보완사항 확인 후 **[수정]** 버튼 클릭 후 수정 –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신고 접수]** 버튼 클릭

※ 1, 2단계의 경우 **[다음 단계로]** 버튼을 눌러야 임시저장 가능

※ **신고 수리 이전**이므로 지도자 명단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지됨

- **신고수리 :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신고 수리된 프로그램 **[증명서 출력]** 가능

※ 매뉴얼 24page **활동주최자의 의무 사항** 확인

※ 지도자 명단의 주민등록번호는 신고 수리 이후에는 삭제되므로 추후 **[복사하여 신고하기]** 진행 시 **재입력** 필요

- **반려** : 처리상태가 **[반려]** 일 경우 **[신고 수리일]**이 생성되지 않으며, **재 신고 접수** 진행

※ 반려 시 **[수정]** 버튼이 생성되지 않으며, **단계 별 신고 접수를 다시 진행**해야 함

※ **[최초신고접수일]** 또한 재신고 접수 한 날 기준으로 **신규 생성**됨
(기존 반려 된 신고 접수일은 삭제 됨)

◈ 변경 신고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가능하며, 변경 내용 및 사유 작성 후 단계별 진행

※ 신고 수리 이후에는 지도자 명단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므로 **재입력** 필요

※ **[작성완료]** 후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접수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 됨

◈ **컨설팅** 주최기관은 신고 접수 전 해당 지역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완료]** 후 신고 접수 가능

※ **[컨설팅 신청]** 클릭 후 컨설팅 요청 가능 단, **신고 접수는 아님**

※ 컨설팅 등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락처는 167page 참고

1단계 계획신고서 작성요령

주최자	주최자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주식회사 등)
청소년수련활동명	프로그램명을 기재합니다.
기간	수련활동 개시부터 종료 시 까지 전체 일정을 선택하며, 다른 대상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프로그램 제공 시 그 기간을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기재 합니다. (예: 18.9.1~31. 기간 중 2박3일 단위 운영일 때 18.9.1~18.9.3)
주요프로그램 내용	활동의 목적, 주제와 주요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입력합니다.
참가인원	청소년 참가 인원 총수를 입력합니다.
1인당 참가비	각각의 참가자(청소년) 1인이 부담하는 비용총액을 입력합니다.
주요 이동경로 및 수단 (이동형 활동경우에 한함)	숙박여부와 무관하게 활동과정에서 이동하는 경우 주요 이동경로와 수단을 입력합니다. (예: 서울 → 원주(버스이동), 원주 → 횡성 → 평창 → 강릉(도보이동))
고위험군 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유형 구분	프로그램명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 클라이밍(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 경우만 해당)
장거리걷기활동	•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집라인(Zip-line),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수련활동 여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선택합니다. (동일기관의 동일프로그램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번호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은 [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숙박/야영장소	해당 활동에서 숙박 또는 야영하는 장소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활동장소	• 활동장소는 활동장 유형을 선택하신 후에 정확한 명칭과 해당 장소의 주소를 우편번호와 함께 입력합니다. • 입력할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우측의 [활동장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입력이 가능합니다. (국토순례등과 같이 활동장소가 다수인 경우는 주요활동장소 위주로 모두 입력합니다.)

▶ **로그인 후 [신고/인증/일반활동] → [수련활동 신고] → [신고등록] 클릭**

▶ **1단계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입력**

1단계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입력

– 해당항목의 클릭 시 작성요령 확인가능. 작성 후 [다음단계로]클릭

※ **[다음단계로]** 버튼은 임시저장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고등록 시 문제가 발생하여 중지되었다면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해당 **[프로그램활동명]**을 클릭하여 추가 작성 후 신고접수가능

▶ 신고서 작성요령

① 주최자 정보 입력

①-1	– [운영대표자 생년월일] 선택 (직접입력 가능 (0000년–00월–0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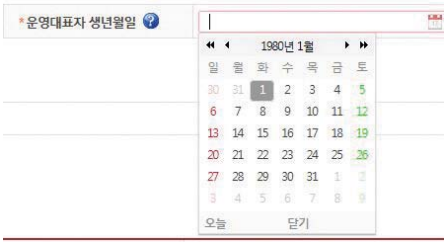
①-2	– 주최기관[담당자성명] 입력

② 인증수련활동 여부 선택 : 인증수련활동의 경우

②-1	– 인증번호 선택 후 [인증번호 조회] 클릭
②-2	– [인증번호 조회]에서 인증번호/프로그램명 등 검색 후 결과에서 프로그램명 클릭

②-3

– **인증 수련활동의 경우** 인증수련활동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입력) 됨

* 참가인원은 인증 수련활동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증번호, 청소년수련활동명, 1인당 참가비, 고위험활동 여부는 자동 입력되어 수정할 수 없음
* 주요프로그램 내용, 1인당참가비 등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인증변경신청] 후 진행

③ 인증수련활동 여부 선택: 인증수련활동이 아닌 경우

③-1

▼

③-2

– 미인증 선택 후 활동정보, 활동기간, 활동장소 입력

④ **청소년수련활동명** : 신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명 입력

⑤ **주요프로그램 내용** : 활동의 목적, 주제와 주요 단위 프로그램 내용 입력

⑥ **참가인원** : '청소년' 참가 인원 총수 입력

(기간 내 여러 회 차 운영 시 한 회 참가하는 최대 인원 입력)

⑦ **1인당참가비** : 참가자 1인당 부담하는 비용 총액 입력

⑧ **고위험활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호 및 별표7에 따른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위험]으로, 그 외의 활동인 경우 [저위험]으로 선택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2에 따라 참가인원 150명이상이거나 고위험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의무인증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 전 인증을 받아야 함

⑨ **활동기간** : 수련활동 시작일 부터 종료 시까지 전체일정 선택

– 다른 대상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프로그램 제공 시 그 기간을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기재

(예 : 18.9.1.~9.31. 기간 중 2박 3일 단위 운영을 2회 진행할 때

➡ 2018-09-10~2018-09-12, 2018-09-25~2018-09-27)

※ 변경신고는 각 회차별 **활동 시작일** 기준 3일 전까지 가능함

(위의 경우 "2018-09-10", "2018-09-25" 각각의 3일 전까지 변경신고 접수가 가능)

⑩ 활동장소

- **주요이동경로 및 수단** : 이동형 활동경우에 한하여 작성(이동형 활동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등 입력)
- **숙박야영장소** : 해당 활동에서 숙박 또는 야영하는 장소 명칭 입력(비숙박형 프로그램인 경우 해당 없음 등 입력, 숙박 및 야영장소가 2곳 이상의 경우 주요한 장소 입력)
- **활동장소 유형** : 청소년시설, 청소년이용시설 등 해당 유형 선택
- **활동장소 명칭** : 해당 장소의 명칭 입력
- **활동장소 주소** : 우편번호 검색 또는 직접 입력
  - * 활동장 추가가 필요할 경우 [활동장추가] 클릭
  - * 해외활동장 일 경우 [해외활동장] 클릭 후 주소 직접 입력

▶ **1단계 계획신고서의 입력을 완료 하였으면** 다음단계로 **클릭**

- 다음단계로 **를 클릭해야 [임시저장] 가능**

2단계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작성요령

직책(지도역할)	• 직책과 지도역할(주최자 ,운영자, 보조자)을 입력합니다. - 주최자는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 단체의 대표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의 운영대표자) - 운영자는 청소년수련활동 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하는 전문·일반지도자입니다. - 보조자는 청소년수련활동 지도를 보조하는 자원지도자 또는 임시지도자입니다. (단, 주최자 등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지 주소	• 지도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시, 도 또는 시, 군, 구와 읍(면), 리(동) 번지까지 입력합니다.
등록기준지 주소	• 지도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소를 시, 도 또는 시, 군, 구와 읍(면), 리(동) 번지까지 입력합니다.
담당업무	• 지도자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를 입력합니다.
자격증명	• 지도자가 소지하고 있는 해당자격증명을 입력합니다. (청소년지도사2급, 사회복지사2급 등)
근무시작 연월일	• 지도자가 근무를 시작하는 연월일을 선택합니다. * 임시,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작일을 입력 혹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요경력	• 지도자의 최근 주요경력사항을 입력합니다.
상근 여부	• 상근(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과 비상근을 선택합니다.
비고	• 지도자의 기타 비고입력사항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STEP 2 신고등록 2단계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명단)

2단계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명단 입력

① 건별 추가 및 일괄등록 선택

- 건별추가 :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직접 참가하는 지도자 명단을 각 인원별로 정보 작성 및 등록하는 방법 (1~5명 등록 시 추천)
- 일괄등록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지도자 명단을 일괄작성 및 등록하는 방법 (5명이상 등록 시 추천)

* 일괄등록 방법 : 2단계에서 일괄등록 클릭 → 지도자 등록 엑셀양식의 첨부파일인 [양식]참여지도자 명단 일괄등록.xls 파일 클릭 → 작성 및 저장

[일괄등록 시 주의사항]

- 한글 등 엑셀 외 문서에서 다량의 자료를 복사-붙여넣기 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어 가급적 제공된 엑셀양식에 직접 작성 요망
- 제공된 엑셀양식별 각 값의 '표시형식'을 준수할 것(텍스트, 일반, 숫자 등)
- 각 셀별 작성방법 및 요령은 엑셀파일의 2번째 sheet인 '입력형식 설명폼'을 참고

[참고사항]

- 지도자 정보등록 상태구분
  - 신규 : 새로 작성 건(신고접수~신고수리완료 상태가 아닌 상태)
  - 완료 : 신고수리완료 및 변경신고완료 건(신고수리완료/변경신고수리완료 상태)
  - 수정 : 신고수리완료 및 변경신고완료 건의 정보를 변경한 경우(변경신고~변경신고수리완료전 상태)
- 등록된 지도자의 주민등록번호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됨.

② 지도자 건별추가-직책(지도역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직책은 원장, 팀장, 사원 등의 직책을 뜻하며 지도역할은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를 뜻함
- 주최자는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기관, 단체의 대표자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의 운영대표자)
- 운영자는 청소년수련활동 시 현장에서 프로그램 직접 지도하는 전문 · 일반지도자
- 보조자는 청소년수련활동 지도를 보조하는 자원지도자 또는 임시지도자

  ※ 단, 주최자 등 지도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내국인	
외국인	– 해외지도자(외국인)인 경우 [☑해외지도자]에 체크 후 달력그림 클릭하여 생년월일만 입력
[예시]	

③ 지도자의 주민등록지 주소와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입력

내국인	– [우편번호검색]을 클릭하여 검색 후 입력 – 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시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지까지 정확히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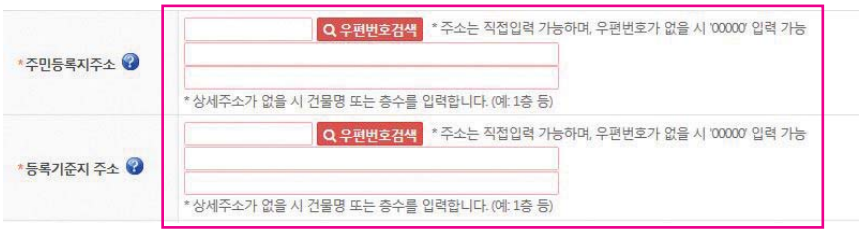
외국인	– 해외지도자인 경우 주민등록지 주소와 등록기준지 주소 미기재
[예시]	

④ 지도자의 담당업무, 자격증명, 근무시작연월일을 입력

내국인 · 외국인 공통사항	 – **담당업무** : 지도자가 담당하는 주요업무 명을 입력 ex) 주최총괄, 활동지도, 활동보조 – **자격증명** : 지도자가 소지하고 있는 해당자격증명을 입력 ex) 청소년지도사2급, 사회복지사2급 등 – **근무시작 연월일** : 지도자가 근무를 시작하는 연월일을 선택
[예시]	

⑤ 지도자의 최근 주요경력, 상근여부, 비고 입력

내국인 · 외국인 공통사항	– **최근 주요경력** : 지도자의 최근 주요경력사항을 입력 ex)활동운영 총괄 – **상근여부** : 상근(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과 비상근을 선택 – **비고** : 지도자의 기타 비고입력사항이 있다면 입력 (생략가능

⑥ 정보입력 완료 및 추가 지도자 정보 입력

지도자 정보 입력을 완료 하였으면 아래의 각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에 따라 지도자 정보 등록 및 추가 지도자 정보입력을 진행

– **저장 후 계속 등록** : 현재 지도자의 정보
– **저장** : 현재 지도자 정보 저장 및 등록
– **취소** : 현재 입력한 정보등록 취소

– **지도자 정보 저장 시 아래 사진과 같이 등록된 지도자 목록 표시**

– **2단계 지도자 명단작성을 완료 시 다음단계로 클릭하여 임시저장 및 3단계로 넘어가기**

▶ 지도자 엑셀 일괄등록(1단계)

– [양식] 참여지도자 명단 일괄 등록] 클릭 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 엑셀 파일 작성 완료 후 [저장]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내/외국인	생년월일	주민번호(앞)	주민번호(뒤)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지도자	홍길동	N		111111	1111111	03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03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없음
자원봉사자	James Williams	Y	2015-10-26								

담당업무	자격증명	근무시작 연월일	최근주요경력	상근여부	비고
지도,안전	청소년지도사2급	2000-01-01	00수련관 활동팀원	Y	
보조지도	없음	2015-10-20	00초등학교 영어강사	N	

– 작성방법은 하단 [입력형식 설명폼] 클릭 후 확인

입력형식 설명 표

컬럼명		필수여부	글자수	컬럼상세설명	비고
직책		필수	한글120자 이내	직책(지도역할)|직책과 지도역할(주최자,운영자,보조자)을 입력합니다. 주최자는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기관, 단체의 대표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의 운영대표자) 운영자는 청소년수련활동 시 현장에서 프로그램 직접 지도하는 전문 · 일반 지도자입니다. 보조자는 청소년수련활동 지도를 보조하는 자원지도자 또는 임시지도자입니다. (단, 주최자 등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제9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성명		필수	한글15자 이내 영문 30자 이내	한글이름 15자, 영문 30자까지 가능, 띄어쓰기 금지	
내/외국인 구분		필수	1자리	N-내국인, Y-외국인	
생년월일		필수	10자리	내/외국인 구분이 Y일때만 작성 YYYY-MM-DD형식으로 입력 (ex. 2015-10-26)	내국인일 경우 생략
주민번호(앞)		필수	6자리	숫자만 가능	외국인일 경우 생략 가능
주민번호(뒤)		필수	7자리	숫자만 가능	외국인일 경우 생략 가능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필수	5자리	00000 형식으로 입력(신주소로 없을 경우 '0' 다섯자리 입력)	외국인일 경우 생략 가능
	주소	필수	한글 120자 이내	정확한 주소 작성(ex. 서울시 -> 서울특별시)	
	상세주소	필수	한글 120자 이내	주민등록지 주소|지도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시,도 또는 시,군,구와 읍(면), 리(동) 번지까지 입력합니다.(신주소로 없을 경우 없음 으로 입력)	
등록기준지	우편번호	필수	5자리	00000 형식으로 입력(신주소로 없을 경우 '0' 다섯자리 입력)	외국인일 경우 생략 가능
	주소	필수	한글 120자 이내	정확한 주소 작성(ex. 서울시 -> 서울특별시)	
	상세주소	필수	한글 120자 이내	등록기준지 주소|지도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소를 시,도 또는 시,군,구와 읍(면), 리(동) 번지까지 입력합니다.(신주소로 없을 경우 없음 으로 입력)	
담당업무		필수	한글120자 이내	담당업무|지도자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명을 입력합니다.	
자격증명		필수	한글120자 이내	자격증명|지도자가 소지하고 있는 해당자격증명을 입력합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사회복지사2급 등) ※ 자격증이 없을 경우 '없음' 으로 입력	
근무시작 년월일		필수	10자리	근무시작 연월일|지도자가 근무를 시작하는 연월일을 선택합니다. YYYY-MM-DD형식으로 입력 (ex. 2015-10-26)	
최근주요경력		필수	한글2000자 이내	최근 주요경력|지도자의 최근 주요경력사항을 입력합니다.	
상근여부		필수	1자리	상근 : Y, 비상근 : N	
비고			한글1000자 이내	비고|지도자의 기타 비고입력사항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등록폼 | 입력형식 설명폼

▶ 지도자 엑셀 일괄등록 (2단계)

– 저장한 엑셀파일 [파일을 선택하세요] 클릭 후 등록 * 확장자 [.xls]만 가능

* 지도자 입력 시 유의사항 - 변경·보완 신청·수정 시 작성된 지도자는 주민등록 번호가 삭제되어 다시 입력 요망

– 엑셀파일 등록 후 '저장' 클릭 → 팝업창의 '확인' 클릭

⇩

– 왼쪽 명단에 지도자 목록 확인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생년월일	주민번호(앞)	
지도사	홍길동	N		111111	1
자원봉사자	James Williams	Y	2015-10-26		

담당업무	자격증명	근무시작 연월일	최근주요경력	상급
지도.인솔	청소년지도사2급	2000-01-01	00수련관 활동팀원	Y
보조지도	없음	2015-10-20	00초등학교 영어강사	N

▶ 2단계 지도자 명단작성을 완료 시 다음단계로 클릭하여 임시저장 및 3단계로 넘어가기

▶ 오류사항 발생 시

–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미기재 등) 팝업창 (오류사항)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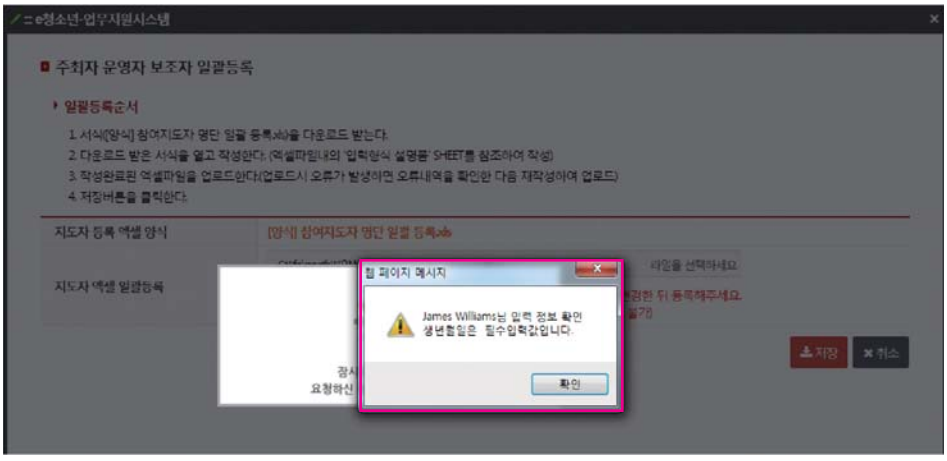

– 오류내용 확인 및 수정

1) [잘못된 데이터]에서 [오류엑셀 저장] 클릭

* 오류엑셀에서 작성한 지도자 정보에서 발생한 오류사항 확인가능
(오류사항이 있는 지도자 정보가 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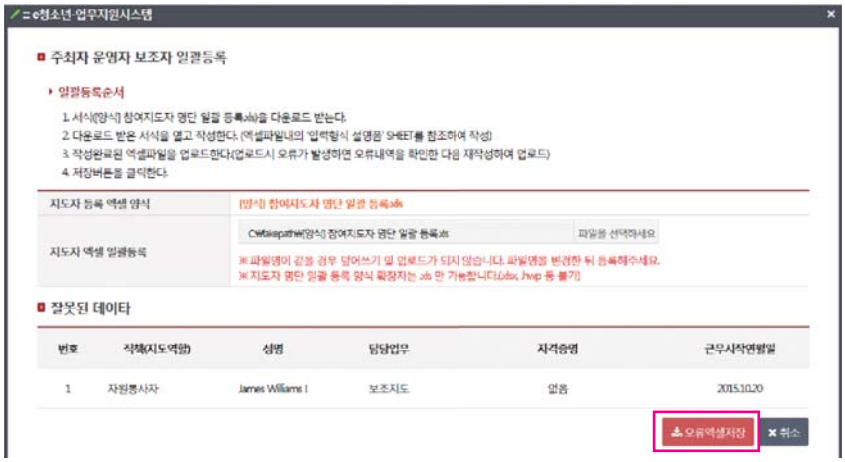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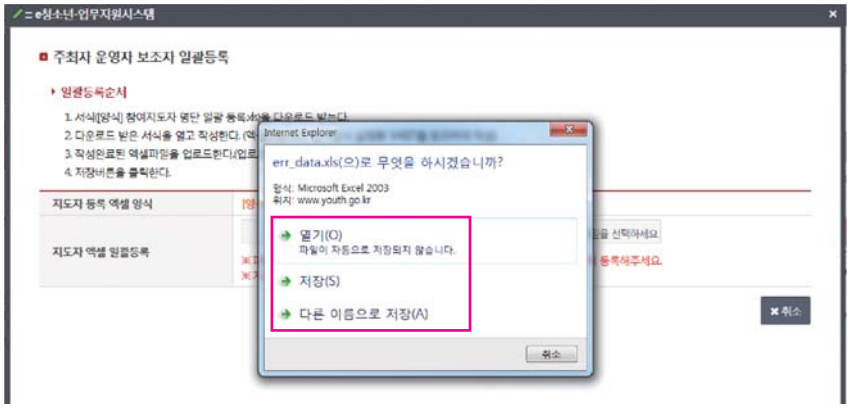

2) [오류 엑셀]에서 오류사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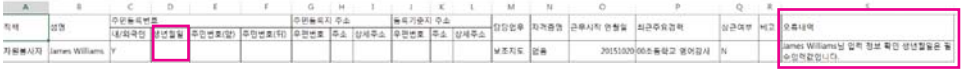

3) [오류 엑셀]에서 오류내용 수정 후 기존에 작성한 지도자 엑셀파일에 수정된 사항을 입력 → 저장 후 재등록

STEP 3 신고등록 3단계 (세부내역서, 보험증권, 운영계획서)

▶ 보험정보 입력(보험명, 보험사, 보험금, 보험가입기간, 보험증권(첨부))

– **보험금(배상금액)** : 보험증권상에 표시된 보상한도액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사망 시 1인 당 보험한도액 8천만 원 이상

– **보험증권(증빙)** : 보험증권 또는 가입사실 증명서 첨부 (JPG, PDF, HWP 등의 파일)
※보험가입 청약서 등의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 보험증권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파일로 통합(압축)하여 업로드

【 예시 】

▶ 프로그램정보 입력

- **기간유형** : 활동프로그램의 기간에 따라 당일/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선택
-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주체** : 해당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주체가 되는 기관유형 선택
- **활동규모 선택** : 개별활동, 소집단활동, 중집단활동, 대집단활동 중 선택
- **프로그램 형태 선택** : 숙박형과 비숙박형 중 선택
- **프로그램 구성 선택**

단위활동 프로그램	어떤 하나의 주제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활동프로그램,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할 특정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주제연속형 프로그램	한 주제를 여러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지속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활동 프로그램들이 단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데 모아서 이루어진 활동프로그램
주제통합형 프로그램	한 주제에서 세분화된 여러 활동이나 비슷한 성격의 활동들을 모아 한 체계 속에서 적절하게 연결하여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서 구성한 활동
종합형 프로그램	부문별 프로그램이 각각 고유한 목표와 성격을 유지하면서 어떤 연결 원칙이나 공통적인 문제, 상호 관심 영역 하에서 그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조합한 총괄성을 가진 프로그램

- **프로그램 영역 선택**

건강 보건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 · 음주 · 약물 · 비만 예방활동, 안전 · 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등	봉사 협력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 · 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활동 등
과학 정보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진로 탐구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체험,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등
교류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 이해활동, 세계문화 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환경 보존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 · 시설 보존활동 등
모험 개척	탐사 · 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역사 탐방	문화재 답사, 역사유적지 탐방, 역사테마체험활동 등
문화 예술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림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자기 개발	표현능력개발,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활동,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 **지도인력(프로그램 투입)**
  - 전문지도자 : 청소년지도사 · 상담사 자격 또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전문 자격 및 지도 경력을 보유한 지도자
  - 일반지도자 :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해당 프로그램 지도에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지도자
  - 보조지도자 : 해당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임시지도자

▸ 프로그램정보

*기간유형	○ 당일 ○ 단기(2~3일) ○ 중기(4~6일) ○ 장기(7일이상)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주체	* 소속 기관의 유형을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 ○ 영리법인 ○ 기타
*활동규모	○ 개별활동 ○ 소집단활동(50명 미만) ○ 중집단활동(150명 미만) ○ 대집단활동(150명 이상)
*프로그램형태	○ 숙박형 ○ 비숙박형
*프로그램 구성	○ 단위활동 프로그램 ○ 주제연속형 프로그램 ○ 주제통합형 프로그램 ○ 종합형프로그램
*프로그램 영역	○ 건강보건 ○ 과학정보 ○ 교류 ○ 모험개척 ○ 문화예술 ○ 봉사협력 ○ 진로탐구 ○ 환경보존 ○ 역사탐방 ○ 자기개발 ○ 기타
*지도인력 (프로그램 투입)	전문지도자 : [ ] 일반지도자 : [ ] 보조지도자 : [ ] 지도자합계 : 0

▸ 프로그램정보

*기간유형	○ 당일 ◉ 단기(2~3일) ○ 중기(4~6일) ○ 장기(7일이상)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주체	* 소속 기관의 유형을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 ○ 영리법인 ○ 기타
*활동규모	○ 개별활동 ○ 소집단활동(50명 미만) ◉ 중집단활동(150명 미만) ○ 대집단활동(150명 이상)
*프로그램형태	◉ 숙박형 ○ 비숙박형
*프로그램 구성	○ 단위활동 프로그램 ◉ 주제연속형 프로그램 ○ 주제통합형 프로그램 ○ 종합형프로그램
*프로그램 영역	○ 건강보건 ○ 과학정보 ○ 교류 ○ 모험개척 ○ 문화예술 ○ 봉사협력 ○ 진로탐구 ○ 환경보존 ◉ 역사탐방 ○ 자기개발 ○ 기타
*지도인력 (프로그램 투입)	전문지도자 : 2 일반지도자 : [ ] 보조지도자 : [ ] 지도자합계 : 2

▶ 참가대상 입력

– 대상연령을 **모두** 선택하고 대상인원의 수를 [학교단체, 청소년단체, 개별모집]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

▸ 참가대상

*대상연령	☐ 초등학생 연령대 ☐ 중학생 연령대 ☐ 고등학생 연령대 ☐ 대학생 연령대 ☐ 기타
*대상인원	학교단체 : 청소년단체 : 개별모집 : 장애청소년 : 부적응청소년 : 기타청소년 : 기타 :

【 예시 】

▸ 참가대상

*대상연령	☑ 초등학생 연령대 ☑ 중학생 연령대 ☐ 고등학생 연령대 ☐ 대학생 연령대 ☐ 기타
*대상인원	학교단체 : 120 청소년단체 : 개별모집 : 장애청소년 : 부적응청소년 : 기타청소년 : 기타 :

▶ 예산형태 입력

– 아래의 자체예산, 보조금, 지원금, 1인당 참가비와 참가인원만 입력하면 참가비전체금액 및 합계금액과 예산형태에 따른 비율(%)이 자동계산 됨

– **자체예산** : 주최자 측에서 지원하는 금액

– **보조금** : 이외의 각종 지원 및 개인 후원금 등

– **지원금**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나 청소년유관단체 및 기관의 공모금, 지원금 등

– **참가비** : 참여자 1인이 순수하게 지불하는 총액

▸ *예산형태

자체예산(%)	보조금(%)	지원금(%)	참가비(%)			합계
			1인당	참가인원	전체	
원	원	원	원	명		0원

※ 1단계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서] 참가인원과 3단계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참가인원이 같아야 [작성완료] 및 [신고접수] 가능

※ 인증프로그램 일 경우 1인당 참가비 수정을 임의대로 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인증변경신청]** 후 진행

【 예시 】

▸ *예산형태

자체예산(51.02%)	보조금(20.41%)	지원금(10.2%)	참가비(18.37%)			합계
			1인당	참가인원	전체	
5,000,000 원	2,000,000 원	1,000,000 원	15,000 원	120 명	1,800,000원	9,800,000원

▶ 프로그램 위탁정보 입력

– 활동프로그램의 위탁여부 선택, 직접운영 시 위탁기관명과 위탁내용 미기재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에 의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은 위탁 제한
(명칭, 구성 내용이 활동을 대표하거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50% 이상)

– 일부 프로그램 위탁 시, 해당 프로그램명 및 위탁내용을 기재합니다.

※ 세부프로그램 및 일정표 등에 제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프로그램 위탁이 아닌 단순 차량 위탁 이용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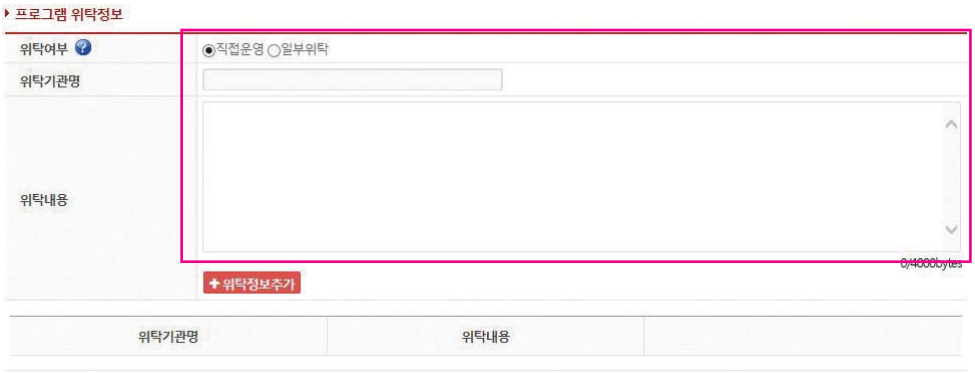

– 일부위탁 선택 시 안내창 [확인] 클릭 후 일부위탁 내용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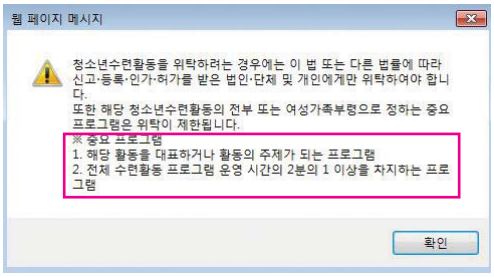

▶ 운영계획서 및 기타증빙서류 첨부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첨부

※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운영계획서를 제외하고 인증서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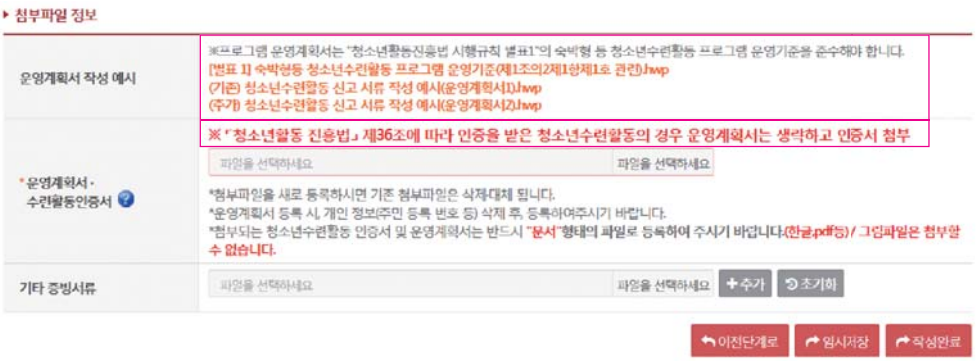

▶ 세부내역서 입력을 모두 완료하였으면 임시저장 또는 작성완료 클릭

▶ **안내창 확인 후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신고접수] 또는 [컨설팅신청] 진행**

※ [작성완료 상태]는 [신고접수(또는 변경신고접수)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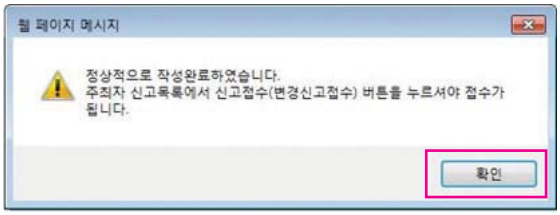

STEP 4 컨설팅 신청 및 완료

⊙ [컨설팅신청] 시 주최기관 소재지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컨설팅 진행
⊙ [컨설팅완료] 후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신고접수]를 클릭해야 신고 접수 완료 됨

▶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컨설팅신청] 클릭

▶ 안내문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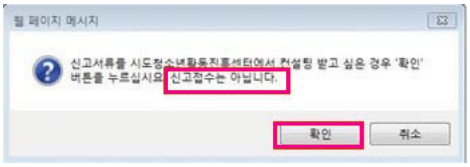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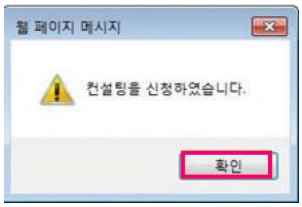

▶ [주최자 신고목록] 처리상태 [컨설트접수] 확인

▶ [주최자 신고목록] 처리상태 [컨설트완료] 확인 후 신고프로그램명 클릭

▶ 주최자 정보 하단에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수정]을 클릭하여 해당사항 수정

STEP 5 신고 접수

⊙ 작성완료 후 신고 접수 진행

▶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신고 접수 할 프로그램 처리상태 [작성완료 등] 확인 후 [신고접수] 클릭

▶ 안내창 확인 후 [확인] 클릭

▶ [주최자 신고목록] 처리상태(신고접수) 확인 및 최초신고접수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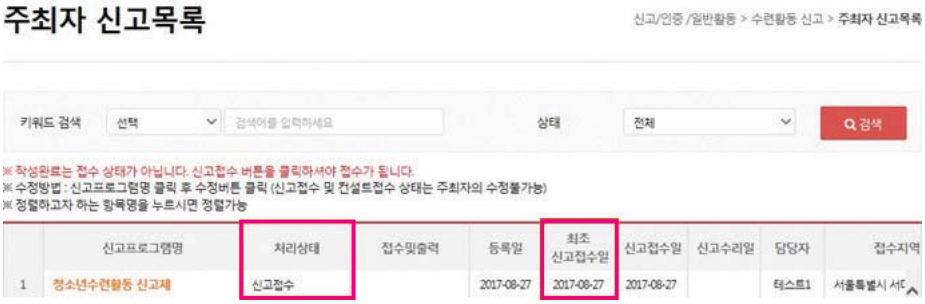

STEP 6 해당 시 · 군 · 구 보완요청 시 [신고접수 이후]

⊙ 보완사항 발생 시 해당 시 · 군 · 구 등 처리기관에서 주최기관에 보완요청

▶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처리상태(보완요청) 확인 후 신고프로그램명 클릭

▶ 보완요청 내용 확인 후 수정 클릭 후 수정 후 작성완료 클릭
(1~3단계 작성은 기존 신고등록 방법과 동일)

▶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신고접수] 클릭 (최초 신고접수일 확인 가능)

STEP 7 신고수리 완료 및 증명서 출력 [신고접수 이후]

⊙ 신고수리 완료 후 해당 프로그램 증명서 출력 가능

▶ [주최자 신고목록]을 클릭하여 접수 및 출력에서 [증명서출력] 클릭

– 증명서 출력 시 PC와 직접 연결된 프린트만 출력 가능
– 직인이 찍혀져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시 · 군 · 구 담당자 문의

▶ 신고 수리 된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서 모든 국민에 공개됨

STEP 8 반려 [신고접수 이후]

⊙ 신고수리 완료 후 해당 프로그램 증명서 출력 가능

▶ **처리상태가 [반려] 일 경우 단계 별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접수해야 함**

※ [최초신고접수일]은 [신고접수] 한 날 기준으로 다시 생성 됨
※ [반려] 상태에서는 [수정] 버튼이 생성되지 않으며 [복사하여 신고하기] 만 가능

STEP 9 복사하여 신고하기

⊙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자, 인원 등을 변경하여 신고 시에 활용

▶ **[주최자 신고목록]을 클릭하여 접수 및 출력에서 [증명서출력] 클릭**

▶ **우측 상단의** 복사하여 신고하기 **클릭**

▶ **안내문구 확인 후 진행(기존 신고등록 및 접수 방법과 동일)**

– 기존 신고접수 방법과 동일하며, 신고수리 된 프로그램 일 경우 **지도자 주민번호가 삭제되어 재입력 필요**

▶ **복사하여 신고하기를 진행 할 경우,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기존 신고 수리된 프로그램]은 그대로 존재하며 새롭게 [신고 접수 내역]이 생성됨**

3. 진행상태 확인

* 진행상태 확인

▶ 신고 접수한 프로그램은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처리상태로 확인가능

▶ 처리상태 설명

처리상태	설 명
작성중	주최자가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상태
작성완료	주최자가 신고내용 작성을 완료했지만 신과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
신고접수	주최자가 시군구 담당자에서 신고내용을 접수 시킨 상태
컨설트접수	주최자가 신고내용을 시도센터로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
컨설트완료	시도센터가 주최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한 상태
보완요청	시군구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 요청한 상태
반려	시군구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반려한 상태
신고수리완료	시군구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신고수리를 한 상태
변경신고 작성중	주최자가 변경신고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상태
변경신고접수	주최자가 시군구 담당자에서 변경신고내용을 접수 시킨 상태
변경신고 컨설트접수	주최자가 변경신고내용을 시도센터로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
변경신고 컨설트완료	시도센터가 주최자의 변경신고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한 상태
변경신고수리 완료	시군구 담당자가 변경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신고수리를 한 상태

4. 신고 수리 후 모집활동

* 모집활동 및 표시 · 고지

⊙ **주최자는 신고 수리 사항 중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모집활동 및 계약 시 인터넷 홈페이지, 기관 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고지**

⊙ **미신고 또는 신고 수리 후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신고 수리 전 모집활동 금지(진흥법제9조의2)
- 신고 수리 후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진흥법제9조의3)
  – 참가자에게 건강상태확인서(개인 또는 단체)를 받아야 함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신고 수리 활동의 이행에 대한 수시 점검 실시(모니터링, 특별점검 등)

【 예시 】 신고 수리 사항 표시 · 고지

【 양식 】 건강상태확인서(개인, 단체)

5. 신고 수리 후 변경신고 (필요 시)

* 변경신고 하기 (활동 실시 3일 전까지)

⊙ 신고 수리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변경 사유, 관련 서류를 처리기관에 제출 또는 신고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접수

- **변경 가능 범위 예시**
  [프로그램] 중요 프로그램이 아니며,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분의1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 신고 수리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
  [지도자] 신고 수리된 지도자와 유사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처리상태 [신고수리 완료] 확인 후 [변경신청] 클릭

▶ 안내문구 확인 후 [확인]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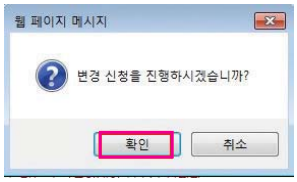

▶ [변경신청] 클릭하면 '[주최자 신고목록] → 신고등록'으로 메뉴 이동

- 변경내용 및 사유 작성 후 단계 별 작성 진행
- 기존 신고등록 및 접수 방법과 동일하며, 변경신고 시에는 2단계 지도자 명단에서 지도자 주민번호가 삭제되어 **재입력 필요**

*** 최초 입력한 주민번호는 신고 접수 후 삭제되기 때문에 변경신고 시 지도자 주민번호는 다시 입력해야 함.**

▶ 작성완료 후 안내문구 [확인]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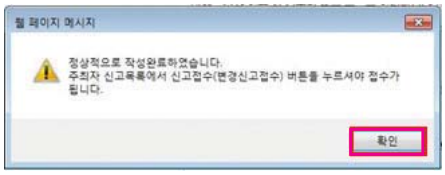

▶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처리상태 [변경신청 작성중] 확인 후 변경신고접수 클릭

– [변경컨설팅신청] 방법은 최초 신고 시 [컨설팅신청] 방법과 동일

– [변경신고접수] 후 [보완요청] 상태일 경우 최초 신고 시 [보완요청] 방법과 동일

▶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처리상태 [변경신고 접수] 확인

▶ 변경신청 시 유의사항

- 신고수리 완료 이후 지도자 주요 개인정보는 삭제되므로 기존 지도자 명단 클릭 후 **재입력** 필요
- 왼쪽 **[성명!]** 클릭 → 안내문구 **[확인]** 클릭 → 주민번호 입력 후 하단에 **[저장]** 클릭
- 다음단계로 클릭 후 **기존대로 신고 등록 및 변경신고 접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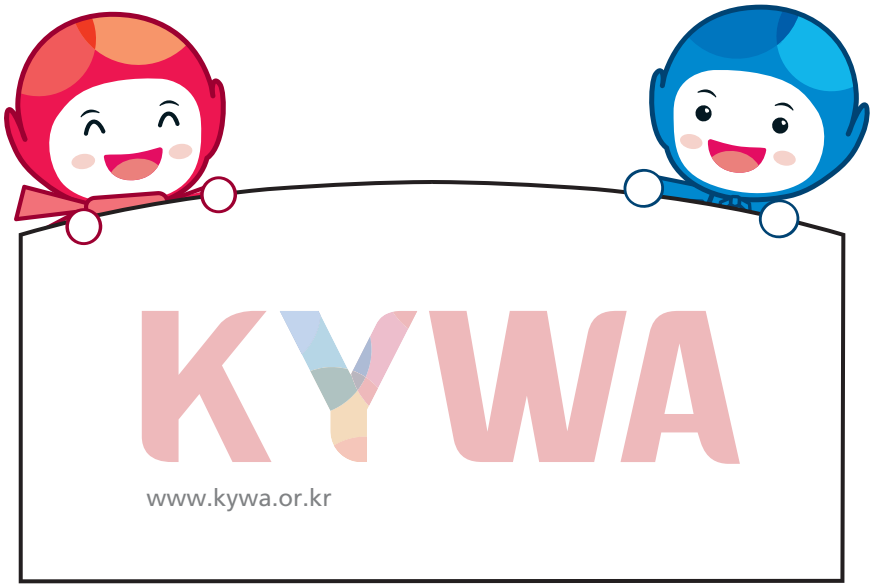
KYWA
www.kywa.or.kr

PART

V

별 첨

1. 자주하는 질문 및 주요 사례
2.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관련 법령
3. 청소년 인원별 지도자 배치기준
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서류 작성 예시 (운영계획서)
5.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담당자 연락처

01 자주하는 질문 및 주요 사례

1.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대상

❖ 공 통

▶ 법인이 비영리법인 / 청소년단체 / 종교단체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관리 · 감독을 받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법인이 아닌 **수련시설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Tip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허가 · 등록 및 지도 · 감독을 받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교류센터 등이 있습니다.

[예시]

△△재단 ☆☆수련원은(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음) 해당법인은 ▲▲공원법, ★★교육진흥법에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도 · 감독 받고 있는데 신고 제외대상 사항인가요?

➔ 법인과 상관없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허가 · 등록 및 지도 · 감독을 받는 시설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법인 / 지자체에서 주최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주관할 때의 신고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실제 활동을 운영하는 곳이 청소년수련시설이라면 해당 수련시설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Tip 법인 / 지자체가 예산만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참가자 모집 및 프로그램 기획 · 운영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 **[청소년 기본법]에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외 다른 법률의 지도 ·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신고 제외 대상이 아닌가요?**

–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운영되는 방과 후 아카데미는 사업의 형태로 청소년수련시설(기관) 내 운영되는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기관 주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Tip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 ·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 · 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시 ·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 · 연수(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대학생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하는데,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1명이라도 참가한다면 신고대상인가요?**

– 프로그램 참가자 전체가 19세 이상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포함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법률 위반사항입니다.

▶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보호자 동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소년 각각의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으로 모집하고 운영한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조항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시설 대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대관 요청을 받은 저희 기관에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단순 대관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가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는 기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 일정 중 외부에 있는 시설을 일부 이용할 때 운영 주최자가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외부 시설에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는 주최자가 외부 활동장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과 활동장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캠프를 기획하고, 모집을 하려고합니다. 강의와 실내 활동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지만, 숙박과 야외활동은 다른 수련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숙박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Tip

– 외부 활동이 있는 경우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등 외부 활동에 대한 보험이 보장된 이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시설 내 활동만 보장 가능

– 외부 활동장 추가 및 검토 시 전체 활동장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동경로, 이동경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등을 수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무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올빼미 캠프 등 무박 2일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할 경우 일정 중 수면시간이 없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라면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휴식 등의 목적으로 수면시간이 존재 등 숙박으로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신고대상입니다.

주의

수면시간이 존재한다면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 · 장비가 확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외로 가는 프로그램을 기획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국외에서 진행되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이라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Tip

–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신고대상인가요?

– 자원봉사를 주제로 한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거나 비숙박형으로 **참가인원이 150명이상인 봉사활동의 경우, 신고 · 인증 대상**이 됩니다.

▶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과 놀이동산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 단순 체험 및 여행활동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테마형 등으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면 단순 여행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목적을 고려하여 신고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청학습능률향상 캠프나 분야별 기능향상 캠프는 신고대상인가요?

– 단순교과학습이나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캠프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Tip **프로그램의 목적을 고려해서 신고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50명 이상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형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Tip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박람회), 단순 관람, 단순 체육활동, 단순 기능습득은 인증 ·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인가요?

– 체육대회로만 일정이 이루어진다면 수련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체육대회를 포함하여 여러 수련거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처리기관

▶ 비영리법인에서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련활동 주최자가 비영리법인일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신고접수 된 건에 대해 [반려] 처리하면 됩니다.
  단, 주최기관이 청소년수련시설이며 소속된 비영리법인 명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수련시설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40조

제40조(신고)

①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주의

비영리법인이 프로그램을 주최하더라도 참여 청소년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의무인증대상이므로 관련 사항을 안내바랍니다. (매뉴얼 9page 참고)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인증부 : Tel. 02-330-2855~8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접수 및 처리 절차

❖ 주최기관

▶ 신고를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년수련활동 모집 14일전**에 신고시스템(www.youth.go.kr)에서 온라인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접수 절차

통합 회원가입
↓
기관정보 등록 또는 담당자 권한요청
↓
신고서 작성

↓	↓
신고등록	컨설팅 접수
↓	컨설팅 완료
	↓
신고접수	신고접수
↓	↓
처리기관 배정 (주최기관 소재지 시 · 군 · 구)	처리기관 배정 (주최기관 소재지 시 · 군 · 구)

주의 신고서 작성 후 컨설팅 접수를 하면 컨설팅이 완료될 때까지 신고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완료 후 접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상태가 신고접수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온라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주최기관 소재지 시 · 군 · 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Tip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구비서류**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시행규칙 별표1 운영기준을 준수 하여 자율양식으로 작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운영계획서는 생략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서 제출
*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
*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험증권, 보험가입 사실증명서 등)

▶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가 지자체장(시장 · 군수 등)입니다. 주최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주소 등)를 입력하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주최자는 운영대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ex. 수련관장, 수련원장 등)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운영 ·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대표자는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Tip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대표자 및 운영대표자 성명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주최자(대표자)가 변경되어, 기존에 등록된 주최자(대표자)와 다릅니다. 이 때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의 표시되어있는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연락하여 변경(사업자등록증 송부)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운영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시설/단체 관리 – 시설/단체 담당자 관리 – 부가정보 수정」에서 운영대표자 성명을 변경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Tip 인증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인증제도 담당부서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인증부 : 02-330-2855~8

▶ 온라인시스템에서 신고 시 운영계획서에 지도자 명단(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첨부해야하나요?

– 별도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시 시스템에 반영되어 입력됩니다. 운영계획서에는 계획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주최기관에서 직접 성범죄 조회를 하여 첨부하면 되나요?

– 직접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범죄 및 결격사유 조회는 해당 지자체에서 일괄 진행 하오니, 해당 기관 지도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지도자 입력 시 정확히 작성하면 됩니다.

▶ 기간으로 신고를 하여 신고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여러 회 차 운영 하게 된다면 신고할 때 참가인원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일 프로그램, 다른 대상으로 여러 회 차 운영을 계획 하였다면, 각 회 차 인원의 합(총 인원, 연 인원 등)이 아닌 **한 회 차 최대 참가 가능한 인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시]

동일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대상으로 5번 모집 · 운영을 하고자 하며, 1회 모집 · 운영 시 최대인원은 70명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인원을 350명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70명으로 해야 하나요?

➔ 5번 모집 · 운영에 대한 총인원이 아닌 1회 모집 · 운영 시 최대인원인 70명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 신고접수 시 지도자의 적정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신고제에는 지도자 필수 배치기준은 없습니다. 단,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운영기준 참고)

Tip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지도자 배치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128~135페이지 참고)

▶ **유스호스텔에서 모집 ·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기관부지 외 외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나요?**

– 유스호스텔은 허가된 시설 범위 외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유스호스텔에서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 · 설비 범위 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외국인 지도자도 지도자 명단에 기재해야 하나요?**
그리고 범죄 경력 조회대상에 해당하나요?

– 네. 외국인 지도자도 지도자 명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의 외국인도 지도에 참여하는 경우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합니다

▶ **우리기관의 지도자가 아닌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하나요?**

– **외부강사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하므로 지도자 명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 **외부강사를 섭외하는데 모집 14일 전에 강사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고, 실시 1주일 전에 강사 명단이 확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단 외부강사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신 후 **외부강사 명단이 확정되면 바로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Tip **변경신고는 활동실시 3일전 까지 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관에서 14일내 처리하지 않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고 처리 요청하여야 합니다.

Tip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시스템 "주최자 신고목록"에서 **상태 값이 '작성완료'가 아닌 '신고접수'인지 확인!**

주의 신고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할 수 없습니다.

❖ 처리기관

▶ 신고가 접수된 후 신고수리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신고수리는 접수 후 14일 이내로 처리를 하여야합니다. 구비서류를 점검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 고 **행정절차법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Tip

청소년대상 수련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자체의 신고 수리 전 활동 모집 등을 행할 수 없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2항 근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행한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운영) 등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신고인(기관)이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활동(모집) 기간 조정 등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신속, 명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수리 시 검토사항

구 비 서 류	점 검 항 목	확인
1.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① 주최자(기관대표)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였는가?	
	②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였는가?	
2.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인증수련활동의 경우 인증서로 대체)	① 프로그램 진행 개요와 전체 일정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 (목적, 추진일정 및 운영사항 등)	
	② 사고 및 환자발생에 대비한 긴급후송대책이 계획되어 있는가?	
	③ 활동 전 참가자와 지도자의 안전교육 시행계획이 있는가?	
	④ 지도자의 역할 및 적정인원의 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확보 계획이 있는가?	
	⑥ 숙실을 위한 공간 및 장비확보 계획이 있는가?	
	⑦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가?	
	⑧ (이동숙박형 활동의 경우)이동 관리계획을 포함하였는가?	
	⑨ 숙박장소의 현황 및 관리계획이 있는가?	
	⑩ 프로그램의 자원은 구체화 시켰는가?(기자재, 소요예산 등)	
3.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①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전문, 일반, 보조지도자)	
	② 주최자 등의 결격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① 주최자(단체)명은 활동계획서와 일치하는가?(활동계획서 상의 주최자 또는 신고인 여부를 확인)	
	② 주최자(단체)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었는가?	
	③ 프로그램명과 활동기간을 기재하였는가?(동일 프로그램의 경우 연 진행기간을 기재)	
	④ 프로그램의 안전점검사항을 표기하였는가?(수련활동 인증서 확인, 고위험군활동 / 프로그램 위탁 / 보험가입 여부)	
	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주체는 표기되었는가	
	⑥ 활동장소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⑦ 참가대상과 활동규모는 표기하였는가?	
	⑧ 프로그램 형태와 구성, 영역은 표기하였는가?	
	⑨ 프로그램 내용을 작성하였는가?	
	⑩ 지도인력 인원수를 작성하였는가?(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과 일치여부 확인)	
	⑪ 예산형태는 작성하였는가?	
	⑫ 위탁프로그램 현황을 작성하였는가?	

▶ 오프라인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아 신고 수리한 경우는 **신고 수리 사항과 접수된 구비서류 일체를 신고시스템 (www.youth.go.kr)에 입력**하면 됩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신고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 통보하여야 함. 시스템에 등록 시 별도 통보를 요하지 않으나, 미 등록 시 공문으로 별도 통보하여야 함.

Tip 신고제 시스템에 지자체 담당자가 오프라인 신고등록을 안 할 경우 주최기관이 미신고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가 지자체장(시장 · 군수 등)인 기관에서 주최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주소 등) 입력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주최자는 운영대표자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안내바랍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ex. 수련관장, 수련원장 등)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련시설 운영 ·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대표자는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Tip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대표자 성명과 운영대표자 성명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 지도자도 지도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지도자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 하나요?

– 외국인도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에 속하여 지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해야합니다. **(국내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 기관에서 신고 시 지도자의 성범죄조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결격사유 자료로 대체해도 될까요?

– 불가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조회 요청하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에 따른 결과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범죄사실 결격사유조회의 경우 조회의 범위 대상이 상이하므로 대체하여 준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과실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 **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시 건건히 조회 요청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며칠 전 신고 수리한 기관의 프로그램인데 오늘 또 동일한 기관의 다른 프로그램이 동일한 지도자로 신고 접수 되었습니다.**

– **신고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처리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관의 동일한 지도자가 있다면 한건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면 됩니다. (한 기관에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신고한 경우 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신고 된 모든 프로그램의 전체지도자로 일괄 조회 가능)
단, **신고 시점이 다른 경우 하루 차이라도 결격사유 조회를 새롭게 진행 해야 합니다.**

참 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33조(처리 기간) 영 제41조에 따라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은 업무협조 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제34조(업무협조의 촉구) 업무협조를 요청한 기관은 회신 문서가 제33조에 따라 정한 처리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에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주의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파산선고사실 등 결격사유 조회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도자의 관할 등록기준지 시 · 군 · 구에만 조회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고 결격사유 조회를 하여도 되나요?

– 아래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동의서 없이 지도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최자에게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④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 ·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8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결격사유 조회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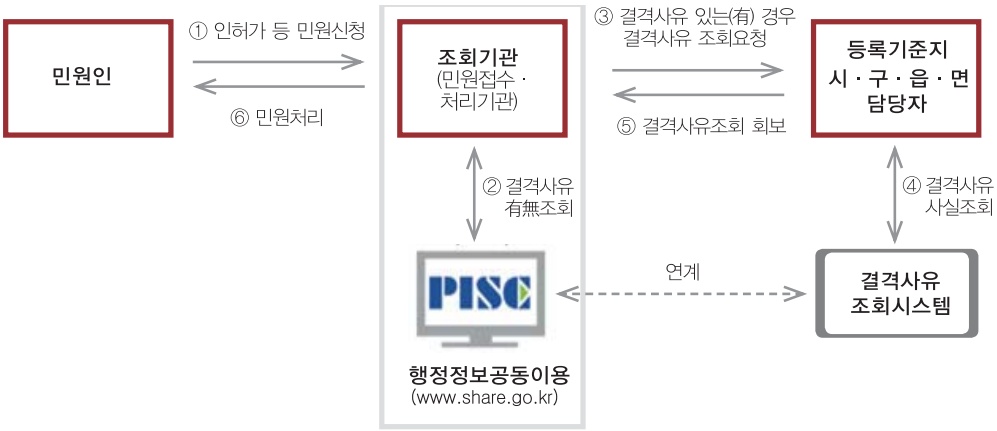

– **결격사유가 없는(無) 경우**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에 결격사유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 출력 가능

– **결격사유가 있는(有) 경우**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결과를 확인하여 업무처리
※ 조회기관(민원접수 · 처리기관) 담당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조회 요청 시 공문에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을 명기

Tip 성년후견 · 한정후견 등 조회는 해당 지도자의 등록기준지에서만 가능하고, 성범죄 조회는 모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 지도자 결격사유 조회에서 어떤 점을 확인 하면 되나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신고자가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신고 수리를 해도 되는가요?

– 법 위반사항입니다. 신고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신고해야 하므로, 일정 등을 연기하도록 안내하시고 추후 보완 및 반려 등을 고려하여 신고접수 할 수 있도록 주최기관에 안내 바랍니다.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②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자가 운영계획서 대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를 등록하여 프로그램 계획의 검토가 어려운데 신고 수리해도 되나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운영계획서 제출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처리기관에서는 신고기관에서 제출한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인증 프로그램명, 운영기관명, 주요활동장소, 인증기간, 대상 및 인원)을 비교 · 확인하여 신고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신고 수리 하면 됩니다.

▶ 신고제외 대상이 신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신고제외 대상이 수련활동을 운영하고자 신고 접수를 한 경우 신고 접수된 건은 반려조치 하면 됩니다.

확인사항

– 수련활동 모집 · 주최기관 확인
– 일정규모(150명) 또는 고위험활동을 포함한 수련활동일 경우 인증 여부 확인

〈신고 제외대상〉

1.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 유스호스텔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확인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유스호스텔 외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바목에 의거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 설비와 부대 ·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 · 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유스호스텔로 등록 된 시설은 시설 외 활동 운영은 금지**됩니다.

Tip

외부활동 여부 확인방법 : 신고서에 작성된 활동장과 청소년수련시설 일람표를 비교 · 확인하면 됩니다.

3. 보험관련

❖ 주최기관

▶ 신고를 할 때 청약서 또는 가입예정 사실 증명서류로 보험가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나요?

–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가입예정 사실 증명서류로는 신고 할 수 없습니다. (단, 보험은 반드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만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 가입금액 이상으로 가입된 보험이면 종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사고 당 금액이 법정 금액에 맞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 당 법정 금액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며 보완, 반려 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 법정 금액에 충족하는 보험으로 변경 가입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한 사고 당 보상금액이 20억인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50명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한 사고 당 보상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 아닌 인원 1명당 사망 보상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1인당 사망 보상금액 8천만 원이 되어야하니, 50명이 참가 시 50명x8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사고당 보상금액은 최소 40억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인당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관련 법정금액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망 시 8천만원, 부상 시 최대 1,5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8천만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나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보장 보험 금액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인당 사망 8천만 원, 부상 최대 1,500만원, 후유장해 최대 8천만원)**

– 계획 신고 된 활동 **모든 장소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험 상품의 종류는 무관하지만 **보장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은 법령에 맞게 만들어진 정책 보험이므로 보험가입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 금액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해 200만원 보장과 치료비 특약 보장이 있으나 이는 필수 가입사항은 아닙니다.

▶ 반드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 법정 가입금액 이상으로 가입된 보험이면 종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1사고 당 보상한도액 등으로 인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보상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보험의 경우 신고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관

▶ 신고자가 보험 증빙자료로 보험청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신고 수리하여도 되나요?

– 보험 증빙자료는 보험가입 후 보험증권이나 가입사실 확인서 등 **보험가입이 증명된 서류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보험청약서 및 보험가입예정서 등으로는 신고 수리 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 법정 가입금액 이상으로 가입된 보험이면 종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1사고 당 보상한도액 등으로 인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보상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의 경우 신고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보완 또는 반려처리 하여야 합니다.

▶ 신고 수리 시 보험 증빙서류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된 사항(주최자, 보장인원, 보장 활동기간 등) 일치여부 및 보험금액 보장 여부 일치여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보장 보험 금액 충족 여부(1인당 사망 8천만원, 부상 최대 1,500만원, 후유장해 최대 8천만원)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장소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험 상품의 종류는 무관하지만 보장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은 법령에 맞게 만들어진 상품이므로 보험가입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 금액에 맞추어져 있음.
또한, 재물손해 200만원 보장과 치료비 특약 보장이 있으나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공 통

[보험가입 관련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보험 가입)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 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 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4. 사후관리

❖ 공 통

▶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 수리 후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주최기관은 활동실시 3일전 까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변경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Tip 변경 가능 범위 예시

프로그램	중요 프로그램이 아니며,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분의1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	신고 수리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
지도자	신고 수리된 지도자와 유사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신고 수리 완료 된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별도의 후속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Tip

인증수련활동일 경우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담당부서에 프로그램 실시 취소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인증부 : Tel. 02-330-2850

❖ 주최기관

▶ 지자체에서 보험 청약서가 첨부되어 보험가입 증빙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보완 사항인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응급후속체계가 없다고 보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완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프로그램 표시 ·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표시 · 고지해야 하나요?

– 신고 프로그램 모집활동 및 계약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 · 고지**를 하여야합니다. (활동진흥법 9조의5 및 시행규칙 1조의5 참고)

▶ 학교에서 건강상태 확인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에 의하여 **주최자는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 요청하여 활동 전 반드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Tip 건강상태 확인서는 참가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응급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 처리기관

▶ 변경 신고수리 시에 신고번호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최초 신고수리 시 기재하였던 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사례가 의심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하지 않고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시 · 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사 확인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자체 개별적으로 행정처분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 · 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에서 신고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보완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여성가족부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을 확인 · 검토하여 주최기관에 통보하고, 조치 후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면 됩니다.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수리 후 해당 수련활동에 대해 조치할 사항이 없나요?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확인을 위해 운영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9조의 7에 따라 필요 시 관계기관 협력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실제 활동 실시여부, 신고 사항과 중요사항 동일여부, 신고 된 내용의 정보 표시 · 고지 여부 확인 (법 제9조의5),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이행 확인(법 제9조의3) 등 점검

5. 법 위반 사항

❖ 공 통

▶ 개인 및 임의단체가 수련활동을 운영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숙박형, 비숙박형 중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의 실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반하여 실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단, 비숙박형(150명 이하의 위험도가 낮은 활동) 수련활동은 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 학교단체가 수련시설 · 영리법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할 경우 프로그램 위탁 제한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 학교는 수련시설 · 영리법인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고, 운영기관은 학교단체수련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탁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운영기관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A기관에서 모집하고, B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 할 경우 위탁제한에 해당하나요

– **모집주체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위탁제한에 해당**됩니다.

Tip

-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 모집되어있는 대상이 타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예)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자치기구 등

- 컨소시엄 등의 공동운영 주최 시 각 프로그램별 운영형태, 지도자 배치, 안전관리 등 기관간의 역할 분담정도를 명확히 운영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고, 컨소시엄 업무 협약서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적인 공동운영은 위탁제한 규정 제외사실을 충족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주최를 하고자하는 운영기관 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 분담 등이 명확하고, 참가하려는 자 및 해당 보호자가 공동주최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책임소재 등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 프로그램에 한해서 50%이상이 위탁제한인가요? 생활, 취침지도 등도 포함하여 위탁제한인가요?

– 숙식, 이동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입니다. (단, 요리체험 등 식사가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운영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프로그램 예시 **활동명 : 청소년 리더십 향상 캠프**

– (활동을 대표하거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① ② ④
– (운영시간의 과반수) 7시간 (①+②+③+④ = 14시간)
– (위탁가능) ③ 한탄강 래프팅(* 활동명이 '여름래프팅체험캠프' 등으로 래프팅이 대표 프로그램인 경우는 위탁 제한에 해당)

구분	1일차	2일차
08:00~09:00		조식
09:00~12:00		③ 한탄강 래프팅(3h)
12:00~13:00		중식
13:00~18:00	① 리더십 기초 다지기(5h)	④ 리더 역할 기르기(5h)
18:00~19:00	석식	
19:00~20:00	② 리더 유형 탐구(1h)	
20:00	세면 및 취침	

02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 · 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 · 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④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13.〉

⑦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⑨ 제8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내용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 ·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 · 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내수면, 해수면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구조 · 구급활동

3. 제9조의2에 따라 신고 수리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과 위험발생의 방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련한 조치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 법인 · 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 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 · 시기 · 목적 · 대상 · 내용 · 진행방법 · 평가 · 자원조달 · 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은 법인 · 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전문개정 2014.1.21.]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2.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67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3조(보험가입)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별표 5] 〈개정 2014.12.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 정도가 중대하여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호	200만원
다.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호	200만원
라.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3호	200만원
마. 법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4호	200만원
바.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5호	200만원
사.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2항제6호	200만원
아.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7호	200만원
자.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8호	200만원
차.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1) 법 제21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법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제12조에 따른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법 제72조제2항제9호	200만원
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0호	200만원
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1호	200만원
파.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2호	100만원
하.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2호	300만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여성가족부령 제135호, 2018. 12. 21., 일부개정]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 · 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 ·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주최자	상호명(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수련활동명*	기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참가인원
		1인당 참가비
	주요 이동경로 및 수단	인증수련활동 여부
		숙박/야영 장소
	변경 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 시>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2.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3.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류	<계획변경 시> 1. 변경사유서 2. 변경 내용 관련 서류 (*청소년수련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운영계획서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방법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1>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직책 (지도 역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담당업무	자격증	최근 주요경력	근무 시작 연월일	상근 여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1>

청소년수련활동 세부 내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주최자(기관)명			프로그램명	
주최자(기관)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활동 기간	부터 까지
	담당자			[ ] 당일 [ ] 단기(2~3일) [ ] 중기(4~6일) [ ] 장기(7일이상)

인증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	프로그램 위탁 여부	보험명	보험금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주체	[ ] 청소년수련관 [ ] 청소년수련원 [ ] 청소년문화의 집 [ ] 청소년특화시설 [ ] 청소년야영장 [ ] 유스호스텔 [ ] 영리법인 [ ] 기타

활동장소	형태	선택	명칭	주소
	청소년시설	[ ]		
	청소년이용시설	[ ]		
	공공기관	[ ]		
	민간기관	[ ]		
	야외	[ ]		
	기타	[ ]		

참가 대상	구분	학교단체	청소년단체	개별모집	장애청소년	그 밖의 청소년	기타
	인원수						

활동 규모	구분	개별 활동	소집단활동 (50명 미만)	중집단활동 (50명 이상~150명 미만)	대집단활동 (150명 이상)
	인원수				

프로그램 형태	[ ]숙박형 [ ]비숙박형
프로그램 구성	[ ] 단위활동 프로그램 [ ] 주제연속형 프로그램 [ ] 주제통합형프로그램 [ ] 종합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영역	[ ] 건강보건 [ ] 과학정보 [ ] 교류 [ ] 모험개척 [ ] 문화예술 [ ] 봉사협력 [ ] 진로탐구 [ ] 환경보존 [ ] 역사탐방 [ ] 자기계발 [ ] 기타
프로그램 내용	

지도인력 (프로그램투입)	구분	계	전문지도자	일반지도자	보조지도자
	인원수				

예산 형태	구분	자체예산	보조금	지원금	참가비(1인당)
	비율(%)				

프로그램 위탁 운영 여부	위탁기관명	
	위탁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1>

신고번호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

프로그램명 :
실시기간 : 20 . . ~ 20 . .
활동 지역 :

1. 상호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4. 생년월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

신고인			신고번호	
신고일			신고처리일	
주최자	상호명(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수련활동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주요 이동경로 (이동수단 포함)			
	숙박 / 야영 장소		인증수련활동 여부	
	참가인원		1인당 참가비	

지도자 자격사항	직책	성명	자격증

결격사유 조회결과	
행정처분내역	

210㎜×297㎜[백상지 12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7.21>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1. 참가자명 :

2. 성별 :

3.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번호	주최자(기관명)	청소년수련활동명

4. 건강상태(질병, 장애, 특이체질 등)

증상	요청사항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20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1. 제1호(「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56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⑤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 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 ·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1. 교육부장관 :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같은 항 제2호의 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같은 항 제3호의 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 교습소 및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 · 단체, 같은 항 제21호의 교육기관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4.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5.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6. 국토교통부장관 :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경찰청장 :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 ·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 9. 14.]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③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 ·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 · 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7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 16.〉

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 · 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③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 16.〉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부과 · 징수

03 청소년 인원별 지도자 배치기준

▶ 일반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아닌 경우)

– 장소별 필요 지도자 수 : 전문 · 보조지도자 및 (안전)전문인력을 합한 수, 다만 최소 1인은 전문 지도자로 구성

실내활동		실외활동		야외활동	
활동인원	지도자 수	활동인원	지도자 수	활동인원	지도자 수
1~30	2	1~30	2	1~15	2
31~60	2	31~50	2	16~30	2
61~90	3	51~70	3	31~50	3
91~120	4	71~90	4	51~70	4
121~150	5	91~110	5	71~90	5
151~180	6	111~130	6	91~110	6
181~210	7	131~150	7	111~130	7
211~240	8	151~170	8	131~150	8
241~270	9	171~190	9	151~170	9
271~300	10	191~210	10	171~190	10
301~330	11	211~230	11	191~210	11
331~360	12	231~250	12	211~230	12
361~390	13	251~270	13	231~250	13
391~420	14	271~290	14	251~270	14
421~450	15	291~310	15	271~290	15
451~480	16	311~330	16	291~310	16
481~510	17	331~350	17	311~330	17
511~540	18	351~370	18	331~350	18
541~570	19	371~390	19	351~370	19
571~600	20	391~410	20	371~390	20
601~630	21	411~430	21	391~410	21
631~660	22	431~450	22	411~430	22
661~690	23	451~470	23	431~450	23
:	:	:	:	:	:

▶ **실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인증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실내에서 운영하는 입소식과 퇴소식)은 배치지도자 수의 50%를 축소하여 배치 가능**

▶ **수상활동**

1-1)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추고 공기통 잠수가 가능한 자

1-2)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문지도자 수 (모두 해당되는 활동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1~5	2
6~10	2
11~15	3
16~20	4
21~25	5
26~30	6
31~35	7
36~40	8
41~45	9
46~50	10
51~55	11
56~60	12
61~65	13
66~70	14
71~75	15
76~80	16
81~85	17
86~90	18
91~95	19
96~100	20
:	:

2) 해수면의 수상에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수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문지도자 수 (모두 해당되는 활동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1~10	2
11~20	2
21~30	3
31~40	4
41~50	5
51~60	6
61~70	7
71~80	8
81~90	9
91~100	10
101~110	11
111~120	12
121~130	13
131~140	14
141~150	15
151~160	16
161~170	17
171~180	18
181~190	19
191~200	20
:	:

3) 수상과 수중을 제외한 연안해역이나 무인도서 활동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문지도자 수
1~20	2
21~40	2
41~60	3
61~80	4
81~100	5
101~120	6
121~140	7
141~160	8
161~180	9
181~200	10
201~220	11
221~240	12
241~260	13
261~280	14
281~300	15
301~320	16
321~340	17
341~360	18
361~380	19
381~400	20
:	:

4) 내수면의 수상에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수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지도자 수
1~15	2	1
16~30	2	1
31~45	3	1
46~60	4	2
61~75	5	2
76~90	6	2
91~105	7	3
106~120	8	3
121~135	9	3
136~150	10	3
151~165	11	4
166~180	12	4
181~195	13	4
196~210	14	5
211~225	15	5
226~240	16	5
241~255	17	6
256~270	18	6
271~285	19	6
286~300	20	6
:	:	:

5) 내수면의 래프팅 활동

– 보트 당 1명

6)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영활동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지도자 수
1~20	2	1
21~40	2	1
41~60	3	1
61~80	4	2
81~100	5	2
101~120	6	2
121~140	7	3
141~160	8	3
161~180	9	3
181~200	10	3
201~220	11	4
221~240	12	4
241~260	13	4
261~280	14	5
281~300	15	5
301~320	16	5
321~340	17	6
341~360	18	6
361~380	19	6
381~400	20	6
:	:	:

▶ 산악, 장거리 걷기활동 및 그 밖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스키활동 포함)

- 전체 지도자 수 : 전문 · 보조지도자 및 (안전)전문 인력을 합한 수
- 해당분야 유자격자 배치 : 전체 지도자 수 중 해당하는 단위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지도자 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해당분야 유자격자 배치 (전문지도자 수)
1~15	2	1
16~30	2	1
31~45	3	1
46~60	4	2
61~75	5	2
76~90	6	2
91~105	7	3
106~120	8	3
121~135	9	3
136~150	10	3
151~165	11	4
166~180	12	4
181~195	13	4
196~210	14	5
211~225	15	5
226~240	16	5
241~255	17	6
256~270	18	6
271~285	19	6
286~300	20	6
:	:	:

예)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이 200명일 경우
- 전체 지도자는 14명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 중 최소 5명이 전문지도자에 배치되어야 함

▶ 항공활동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해당분야 유자격자 배치 (전문지도자 수)
1	1	1
2	2	1
3	3	1
4	4	2
5	5	2
6	6	2
7	7	3
8	8	3
9	9	3
10	10	3
11	11	4
12	12	4
13	13	4
14	14	5
15	15	5
16	16	5
17	17	6
18	18	6
19	19	6
20	20	6
:	:	:

※ 단, 항공활동의 경우 인증위원회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교육대기 (위험도가 높은 활동 중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기하는 경우)

대기하는 인원	전체 지도자 수
1~30	1
31~60	2
61~90	3
91~120	4
121~150	5
151~180	6
181~210	7
211~240	8
241~270	9
271~300	10
301~330	11
331~360	12
361~390	13
391~420	14
421~450	15
451~480	16
481~510	17
511~540	18
541~570	19
571~600	20
:	:

0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서류 작성 예시 (운영계획서)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예시) 미인증 프로그램

※ 작성요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준하여 작성
- 신고서 및 세부내역서와 내용과 운영계획서 내용이 상이하지 않아야

*** 우리두리 같이 ***

1. 프로그램 구성

가 활동명 : 『우리두리같이』

나 목 적

1)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청소년활동 및 기회 제공하며 신체적 · 정서적 변화에 따른 올바른 성장을 유도함
2) 청소년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아 존중과 소속감 형성하고 올바른 성장과정을 배워가며, 협동심을 기름
3)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며, 청소년의 가져야할 지, 덕, 체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인성을 배움으로서 꿈이 있는 성인으로 성장시킴

다 목 표

1)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협동심을 알아가는 모티브 제공
2) 올바른 자아정체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성장과정으로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소속감과 개성을 인정하는 정체성 확립
3)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가치관을 증진시킴

라 개 요

1) 기　　간 : 2017년 9월 1일(월) ~ 3일(수)(2박 3일)/ 숙박형
2) 대　　상 : 고등학교 (16세 ~ 17세)
3) 인　　원 : 100명
4) 활동장소 : 00청소년수련원
5) 참가비용 : 72,200원 (단, 교통비 자체부담)
6) 모집 및 홍보 일시 · 방법 : 8.1~15일(16일간) / 지역 언론 4개사 이용 및 정간홍보, 본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 모집 실시

마 『우리두리같이 캠프』 일정표 (2박3일)

–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 : 17시간
– 프로그램 운영형태 :
　자체운영(전체 프로그램 중 73.5% 자체운영 : 12.5h)
　프로그램 위탁운영(전체 프로그램 중 약 26.5% 위탁운영 : 4.5h)

<table>
<tr><th>시 간</th><th>1 일 차</th><th>2 일 차</th><th>3 일 차</th></tr>
<tr><td>07:00~</td><td rowspan="7"></td><td colspan="2">기 상 및 숙 소 정 리</td></tr>
<tr><td>07:30~</td><td colspan="2">아 침 식 사</td></tr>
<tr><td>09:00~</td><td rowspan="3">공동체 훈련
▷ 바운드볼 ▷ 거미줄통과
▷ 구슬나르기 ▷ 인디안놀이
▷ 협동양탄자 ▷ 카드뒤집기
▷ 단체줄넘기</td><td rowspan="2">미디어여행
자연산책
칼라리더십
(분반 형태로 운영)</td></tr>
<tr><td>10:00~</td></tr>
<tr><td>10:30~</td><td rowspan="2">맺는마당 및 설문작성</td></tr>
<tr><td>11:00~</td></tr>
<tr><td>12:00~</td><td>점 심 식 사</td><td>점 심 식 사</td></tr>
<tr><td>12:30~</td><td rowspan="3">단체사진촬영</td><td rowspan="9"></td></tr>
<tr><td>13:00~</td></tr>
<tr><td>13:30~</td></tr>
<tr><td>14:00~</td><td>도착, 소지품검사,숙소배정</td><td rowspan="4">오리엔티어링
이미지햄투어링
모둠북
스네이크보드
탭댄스
챌린지
(분반 형태로 운영)</td></tr>
<tr><td>15:30~</td><td>여는마당,생활안내,
안전교육</td></tr>
<tr><td>16:00~</td><td rowspan="2">만남의 시간
(프로그램을
알아 BOA요)</td></tr>
<tr><td>17:00~</td></tr>
<tr><td>17:30~</td><td colspan="2">저 녁 식 사</td></tr>
<tr><td>19:00~</td><td colspan="2">천체관측</td><td rowspan="3">문화발표</td></tr>
<tr><td rowspan="2">20:30~</td><td>강강술래 야간협동</td></tr>
<tr><td>(선택 중 1)</td></tr>
<tr><td>22:00~</td><td colspan="2">휴식 시간, 숙소정리</td></tr>
<tr><td>22:30~</td><td colspan="2">취침준비 및 취침</td></tr>
</table>

2. 프로그램 세부내용

가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일시	프로그램	내용	비고
1일차 야간	천체관측	별 이야기, 별자리이야기, 망원경사용법	위탁운영
	강강술래	한국 전통놀이를 이용한 팀워크 형성	
	야간협동	학급별 미션과제를 통한 단합과 협동심 고취	
2일차 오전	공동체 활동	각 포스트별 공동체 활동을 통한 학급별 미션 수행과정	
2일차 오후	모둠북	한국 타악기 북을 이용해 음악에 맞춰 연주	
	탭댄스	댄스 음악에 맞춰 탭댄스 공연	
	오리엔티어링	지정된 포스트의 미션을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함	
	스네이크	S보드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종 스포츠	
	챌린지	챌린지장에 있는 인공암벽을 직접 올라가면서 체험함	
	이미지햄 투어링	무전기를 이용한 조별 미션수행활동	
2일차 야간	문화발표	친구들과의 어울림을 통한 장기자랑 페스티발	위탁운영
3일차 오전	미디어여행	다양한 영상들을 나레이션과 함께 감상함	
	자연산책	자연과의 스킨십을 통한 환경의식 고취	
	칼라리더십	7개의 리더십 유형 알아보기	

나 단위프로그램 세부내용

1) 관계형성

참가자의 욕구을 파악, 수용하여 모둠 및 자치회를 구성하고 관계형성 게임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친밀감 고취시켜 청소년활동의 흥미유발.

▼ 세부내용

활 동 명	관 계 형 성 (100명)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2시간 (100명)	
보조지도자	OOO, OOO, OOO, OOO			
일 시	1일차 / 16:00 ~ 17:30	활동장소	강의실	
활 동 내 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담당자	준비물
캠프소개 프로그램 소개 모둠 및 자치회 구성 관계형성 게임	• 일정 소개 및 활동 안내 • 단위프로그램 설명 • 단위프로그램 선택 – 휴 식 – • 관계형성 게임 – 모둠별 구호 만들기	10분 10분 20분 15분 1시간	활동 운영부	분반표

2) 천체관측 별별이야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이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신비함을 스스로 체험 • 별의 관측방법을 습득하고 별의 아름다움과 천체에 대한 흥미 높임			
담당지도자	□□천문대 OOO 연구원		소요시간	2시간(100명)
보조지도자	OOO, OOO, OOO, OOO			
일 시	1일차 / 19:00 ~ 21: 00		활동장소	천문대, 대강당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우주의 이해 천체장비 다루기	• 우주에 대한 이해 – 성운, 성단, 우주론 등	20분	노트북 프로젝트 천체망원경 천체용장비
전개		• 천체관측에 대한 이해 – 관측 가능한 대상의 설명 및 관측 – 천체망원경 이해	10분 15분	
		– 휴 식 –	10분	
		• 우리별자리의 이해 – 잊혀져가는 우리 별자리 이해	15분	
정리		• 천문대 관측 – 관측 실습 및 사진 촬영	50분	

3) 야간협동

다양한 포스로 진행되는 공동체 활동은 학급별 단합된 모습과 협동심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진다. 또한 각 반별 구호와 응원으로 학급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준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한 학급별 협동심 도모 – 포스트별 단체 게임을 통한 소속감 형성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2시간(100명)
보조지도자	OOO, OOO, OOO, OOO			
일 시	1일차 / 19:00 ~ 21: 00		활동장소	캠핑장, 수련원내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포스트 진행 및 해결방법	• 야간협동 프로그램 소개 – 목적 및 단합심 고취 – 학급별 구호 및 응원	20분 20분	미션용지 지도
		– 휴 식 –	10분	
전개		• 포스트 진행 및 이동 – 각 포스트로 자유롭게 이동 – 포스트 미션 수행 및 해결	10분	
		• 야간협동 피드백 – 활동 목적 및 피드백	40분	
정리		– 학급별 소속감 형성 및 협동심	20분	

4) 강강술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고 활동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에 대한 이해 및 팀워크를 향상시킨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전통놀이를 이해하고, 팀워크를 향상 하기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2시간(100명)
보조지도자	OOO, OOO, OOO, OOO			
일 시	1일차 / 19:00 ~ 21: 00		활동장소	체육관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팀워크 활동 강강술래활동 마무리	• 강강술래 유래에 대한 설명 – 강강술래 구성과 특성 – 강강술래에 담겨진 의의와 특징 • 팀워크 활동 – 짝체조하기 – 모두만나기 – 휴 식 –	20분 20분 10분 50분	강강술래 음악
전개		• 강강술래 활동 – 청어엮기, 고사리 꺾기 등 – 공동체에 대한 의미에 대한 피드백	20분	
정리				

5)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은 개인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을 바탕으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프로그램이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단위 활동을 통한 수련생간 공동체의식 함양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3시간(100명)
보조지도자	OOO, OOO, OOO, OOO			
일 시	2일차 / 9:00 ~ 12:00		활동장소	체육관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전체놀이 공동체놀이설명	• 단체게임 – 안마하기, 구호 외치기등 – 인솔하여 단위 활동시행 – 휴 식 –	20분 20분 10분	활동지 공동체활동 도구
전개	놀이활동	• 공동체 활동 – 파이프라인, 단체 줄넘기 – 바운드볼, 지네발 등	110분	
정리	평가	• 활동지의 최종결과 발표 – 공동체 놀이의 의의 재강조	20분	

6) 모둠북

여러 가지 리듬을 전통악기인 북을 통해 표현해 보며, 함께 연주하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한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자신만의 느낌과 리듬을 북을 통해 표현함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3시간(20명)
보조지도자	OOO			
일 시	2일차 / 14:00 ~ 17:30		활동장소	대강당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활동소개	• 전통악기에 대한 소개 및 의의 – 리듬과 가락에 대한 기본 설명	30분	MP3 북 PPT
전개	악기편성 구분연주	• 악기 사용법 및 역할 설명 – 북에 대한 리듬 설명 – 자리 배치 및 공연 준비	80분	
정리	악기정리	• 활동장소 정리 및 공연 리허설 – 연습한 악기에 대한 공연 – 마무리 정리	20분	

7) 탭댄스

탭댄스를 통한 자유로운 감정표현과 건강한 정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자유로운 이미지 표현으로 창의성과 표현력 향상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3시간(20명)
보조지도자	OOO			
일 시	2일차 / 14:00 ~ 17:30		활동장소	어울마당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활동소개	• 스트레칭 및 탭댄스의 이해 – 가벼운 스트레칭 – 탭댄스에 대한 기본지식	30분	MP3 탭슈즈 PPT
전개	워밍업 기본동작	• 기본동작 배우기 – 탭슈즈 착용 및 기본동작 – 음악에 맞춰 작품 완성하기	90분	
정리	정리	• 공연 준비 및 마무리 – 탭댄스 공연 준비 – 마무리 및 피드백	60분	

8) 오리엔티어링

오리엔티어링은 미지의 지형 속에 표시된 몇 개의 지점을 지도와 나침반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기이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자연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모험개척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3시간(20명)
보조지도자	OOO			
일 시	2일차 / 14:00 ~ 17:30		활동장소	202호강의실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활동소개	• O/L의 정의 및 경기방법 – 나침반 사용법 및 경기규칙	30분	활동지 컨트롤박스 PPT
전개	그룹편성 출발	– 조 편성 및 출발준비 • 출발위치로 이동 – 지도와 나침반 제공 및 출발	90분	
정리	정리	• 도착지 점수 수집 및 공개 – 득점결과와 순위 발표 및 피드백	30분	

9) 스네이크보드

스네이크보드는 어깨와 상체를 사용하고, 그 다음 하체인 다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신체의 근육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신종스포츠 보급과 신체적 균형감각 발달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3시간(20명)
보조지도자	OOO			
일 시	2일차 / 14:00 ~ 17:30		활동장소	체육관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활동소개	• 기본이론 설명 – 타는 법, 보호 장비 착용 법	30분	스네이크보드, 보호장비
전개	연습	• 연습 및 실습 – 2인1조가 되어 진행 – 기본동작 공유 – 간단한 구조물을 이용한 연습	20분 80분	
정리	정리	• 정리 및 마무리 – 장비 정리 및 피드백	20분	

10) 챌린지

등반하는 과정에서의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배양하며, 어려운 등반과정을 통한 강인한 정신력과 신체적 발달을 도모한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암벽등반을 통한 도전정신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형성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3시간(20명)
보조지도자	OOO			
일 시	2일차 / 14:00 ~ 17:30		활동장소	인공암벽장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활동소개	• 기본이론 설명 – 장비 배분, 교육장 소개 – 활동에 필요한 준비운동	30분	인공암벽장 안전장비 등
전개	등반	• 장비 착용 및 등반시범 – 장비 착용법, 등반시범 – 줄잡이의 역할 및 등반 – 참가자 실습1	20분 40분 40분	
정리	정리	• 참가자 실습2 및 마무리 – 활동 시 준수사항 전달 – 정리 및 마무리	40분	

11) 이미지햄투어링

이미지햄투어링은 이미지를 추측하여 목표지점을 찾아가 무전기로 본부에서 전달하는 미션 수행하기.

▼ 세부내용

활동목표	창의력 향상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3시간(20명)
보조지도자	OOO			
일 시	2일차 / 14:00 ~ 17:30		활동장소	203호강의실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활동소개 그룹편성	• 이미지햄투어링 정의 및 경기방법 – 무전기 사용법 및 경기규칙 – 조 편성 및 출발준비	30분	활동지 무전기 PPT
전개	출발	• 출발위치로 이동 – 미션지 제공 및 출발	90분	
정리	정리	• 도착지 점수 수집 및 공개 – 득점결과와 순위 발표 및 피드백	30분	

12) 문화발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마음을 열고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마당으로써 함께 어우러져 느끼는 공동체적 삶의 참 맛을 공유시키는 활동이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공동체의식과 상호유대감을 강화하고 수련기간 중의 생활과 프로그램 정리			
담당지도자	◇◇기획 강사 OOO 팀장		소요시간	2시간(100명)
보조지도자	OOO, OOO, OOO, OOO			
일 시	2일차 / 19:00 ~ 21:00		활동장소	대강당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분위기 게임	• 분위기 게임 – 분위기 조성 – 박수게임 – 단체 게임 – 애드벌룬	30분	애드벌룬 음악CD 등
전개	장기자랑	• 장기 자랑 – 학생 준비 한 장기 자랑하기 – 활동 배운 것 장기 자랑하기	10분 60분	
정리	정리	• 마무리 및 정리 – 피디백 및 숙소이동	20분	

13) 미디어여행

다양한 시청각 효과와 편집을 통하여, 참가학생들에게 올바른 미디어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시청각자료를 통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유 및 추억 만들기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1시간30분(50명)
보조지도자	OOO, OOO			
일 시	3일차 / 9:00 ~ 10:30		활동장소	대강당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소개	• 미디어여행 프로그램 소개 – 창의적인 영상 보기	30분	영상 PPT 음악 빔 노트북
전개	영상감상	• 영상스토리 시작 –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상 보기 • 올바른 영상 보기 – 잘못된 영상, 올바른 영상 보기	60분 10분	
정리	정리	• 정리 및 피드백	10분	

14) 자연산책

생태 관찰로에서 다양한 식생과 곤충들을 관찰 채집하여 생태감수성을 향상 시킨다.

▼ 세부내용

활동목표	생태관찰을 통한 친자연적 사고 및 환경보전의식 배양			
담당지도자	활동운영부 OOO		소요시간	1.5시간(50명)
보조지도자	OOO, OOO, OOO			
일 시	3일차 / 09:00 ~ 10:30		활동장소	음악실
지도과정	지도내용	세 부 내 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활동소개	• 숲 체험에 대한 소개 – 자연에 대한 PPT 교육	30분	PPT 생태지도 루페, 거울, 청진기
전개	이동	• 생태관찰로 이동 – 채집도구 및 지도 제공 – 주의사항 및 이동	80분	
정리	정리	• 채집 곤충 및 식생에 대한 설명 – 정리 및 피드백	20분	

3. 기자재 활용

[작성요령]

운영하고자 하는 각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확보 상황 제시(적정 기자재, 장비 등)

가 기자재 운영

1) 수련원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사용 기자재 및 비품은 모두 수련원에 귀속된 용품을 사용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 한다.

2) 수련활동 용품은 지도자가 상시 점검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프로그램 사용 기자재 목록 현황

프로그램	사용 기자재	수량(개)	보관장소	담당	비고
천체관측	200mm굴절망원경	1	천문대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중소형천체망원경	10			
	ccd카메라	1			
	영상교육장비 세트	1			
야간협동	컨트롤박스	30	창고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프로그램	사용 기자재	수량(개)	보관장소	담당	비고
공동체활동	지네발달리기, 파이프라인, 바운드볼, 인디언스틱, 도미노,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통나무구리기	각1SET	체육관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모둠북	북, 북채	100SET	대강당, 공연장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탭댄스	탭슈즈	100SET	어울마당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오리엔티어링	컨트롤박스	30	창고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지도	500			
	활동지	1,000			
	등번호	100			
스네이크보드	스네이크보드	80	체육관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보호장치	80set			
암벽등반	로프 및 안전핀	30set	암벽등반장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안전장비(헬맷, 장갑,메트리스 등)	30set			
자연공작	드 릴	10	공작실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톱	30			
	본드	30			
	가위	30			
자연산책	망원경	30	천문대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사진기	1	204호창고		
	생태지도	30			
국궁	국궁 활, 화살	50set	국궁장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안전장비	40set			
환자 관리	응급처치물품세트	다수	보건실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의약품	다수			
공통	음향장비	다수	각 장소	OOO	17.X.X 상태확인 이상무
	디지털 사진기	1	사무실		
	사진출력기	1			
	소모품	다수			

※ 기본적인 음향, 영상, 노트북, 빔 프로젝트, 공동체 장비는 지정된 활동 장소에 기 비치되어 있음.

※ 기자재 및 장지 사진 자료

천체장비

국제회의장, 대강당, 체육관 음향장치

스네이크보드

체육용품

숲체험 프로그램 준비물

오리엔티어링,야간협동공동체, 영상, 음향장비, 구급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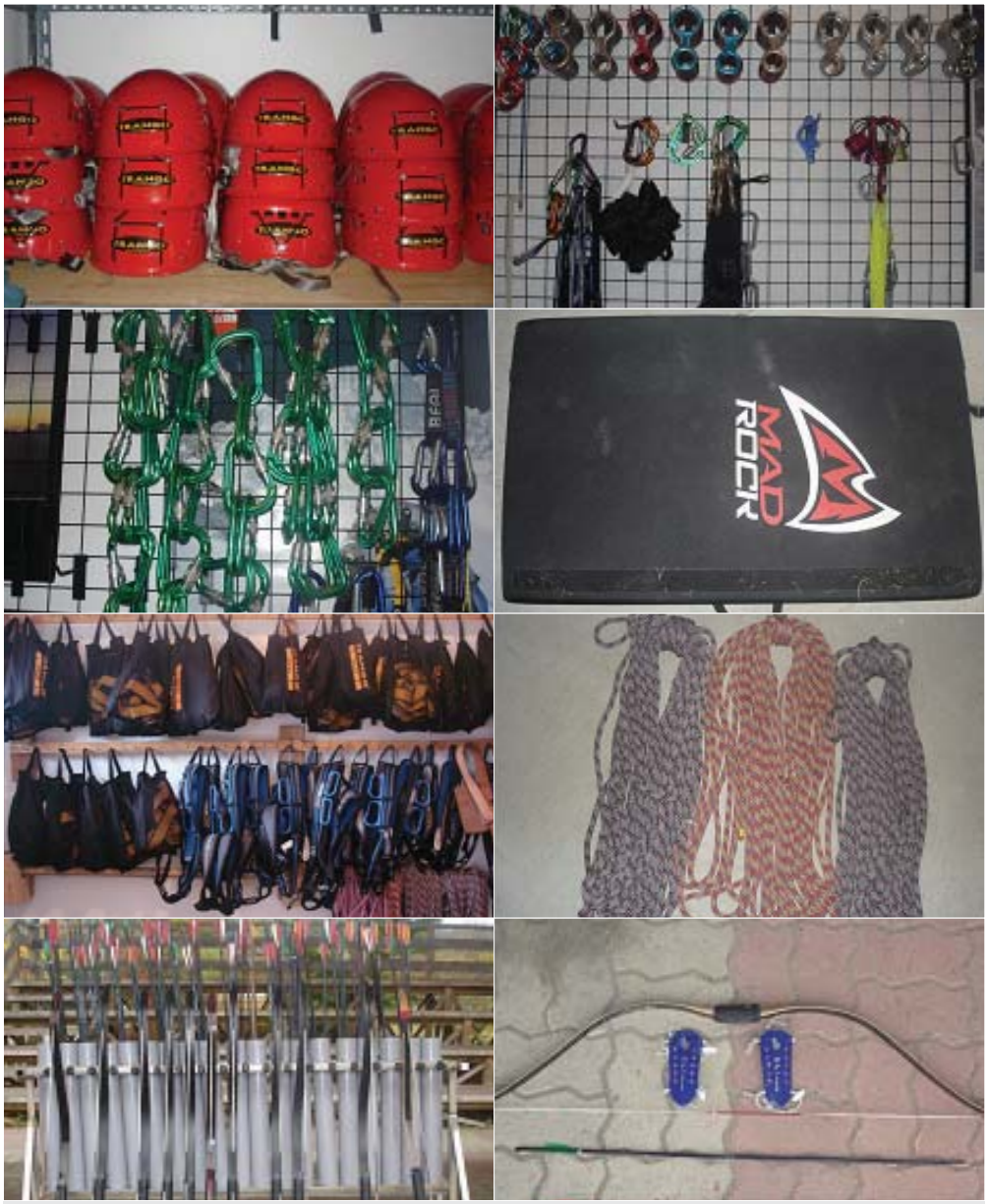

암벽등반, 국궁

자연공작실

모둠북

탭댄스

4. 안전관리 계획

[작성요령]

-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장소에 맞추어 안전관리 계획 · 시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 중 이동하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이동 시 안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에 맞게 마련(지도인력, 참가청소년 구분하여 마련)
- 운영 중 안전 관리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대비하여 조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가 안전관리 지침

가) 위험요소 점검

○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 전까지 참가자 전원의 건강상태 확인을 한다. (확인기일: '17.8.25)

○ 지도자는 프로그램 전 개별 요양호자 명단을 확보하여 언제나 확인 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공간은 안전표시를 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나) 프로그램 시 안전관리

○ 신체활동이 수반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예비적인 연습을 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참가청소년들이 지도자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개별 행동을 삼가고 모둠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프로그램 진행 중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응급조치하고 즉시 보건선생의 조치를 받는다.(필요시 지정병원으로 후송 조치한다)

○ 프로그램 운영 시 정신적, 신체적, 적응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파악하여 보건선생님의 조치를 받는다.

○ 무리한 활동,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자는 늘 주시한다. (사고 발생 시 지휘계통에 보고)

○ 프로그램 진행 전 항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요인을 충분히 제거한다.

○ 활동 시 보호구 착용 및 안전 예방에 힘쓴다.

다) 시설 및 장비 이용

○ 지도자의 입회 없이 시설 및 장비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가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이용방법을 숙지시켜 사용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한다.

○ 활동 장소의 위험지역에는 지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안전 상태를 유지한다.

라) 환자 관리

○ 환자는 무리한 신체활동이 수반되는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보건선생의 판단 하에 참여 가능한 활동에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환자발생 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지도자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자의 치료적 조치는 양호선생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건선생의 처방에 따른 지도자의 조치는 가능하며, 지도자는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조치의 능력을 갖춘다.

○ 야간에는 구급약을 비치하고 보건선생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 중환자 발생 시 지도자는 보건선생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부상자를 단독 으로 방치하지 않으며, 지정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나 사전교육

▪ 지도자

교육명	사전안전교육		
일 시	2017년 X월 XX일 (수)	담당자	보건교사
장 소	대강당	대 상	담당지도자 및 보조지도자
시 간	교 육 내 용		준비물
14:30 ~ 15:00 15:00 ~ 16:00 16:00 ~ 17:30	• 안전관리계획 공유 • 안전사고 예방조치 설명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안전관리 계획서 응급처치 도구

▪ 참가청소년

교육명	안전교육		
일 시	프로그램 1일차	담당자	보건교사
장 소	대강당	대 상	참가청소년
시 간	교 육 내 용		준비물
15:30 ~ 16:00	• 안전사고 시 대처 요령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안전관리 안내서 응급처치 도구 및 모형

다 응급후송체계

1) 지정 의료기관

기관명	위치	거리	전화번호	진료시간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천안 삼룡동	00 Km(00분 소요)	570-7200	24시간
천안 우리병원	천안 청당동	00 Km(00분 소요)	590-9000	09:00~19:00
천안단국대학교병원	천안 안서동	00 Km(00분 소요)	(응급실550-6843)	24시간

○ 천안의료원은 응급 환자 발생 시 평일 주간에는 환자 예약이 가능.
○ 단대병원은 전화 접수 불가.(병원선정에 있어 보건담당자에게 반드시 전화통보)
○ 지정의료 기관에서만 후불제 적용 가능.

2) 환자발생 후송조치

○ 주간환자 발생시(08 : 30~19 : 00 학교단체 보건실 운영시간)

- 프로그램 중 환자발생시 보건실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고를 알린다.
- 보건담당자 환자 확인 후 차장 혹은 부장에게 보고하여 차량을 요청한다.
- 보건담당자가 전화로 예약 접수한다.(천안의료원, 우리병원)
- 후송 시 진료비는 후불처리로 진행하고 약값은 보건담당자에게 받아간다.
- 보건담당자는 환자 복귀 후 필요시 사후치료(보험)에 대해 안내한다.
  (※필요시 : 활동 중 부상, 수련 생활 중 안전사고)
- 응급환자후송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장에게 보고한다.
- 보호자에게 보험 안내 후 치료가 종료되면 보험사(**해상)에 사고내역을 접수 (수련원 측) 및 진료비를 청구한다(피해자 측)

3) 보건실 담당자 부재 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 부장에게 보고 후 진료기관 선정하여 환자의 인적사항을 지정 진료기관에 제출하고 ○○청소년수련원 소속직원임을 밝힘.

○ 응급환자후송보고서 작성하여 보건실담당자에게 전달함.

작 성 일 자	년	월	요일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나이: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사건 경위	일 시	장 소	목격자 (사고 현황 파악자)	가 해 자
사고 경위				
증상 및 1차 응급 처치				
응급처치자				
후송상황	후송기관명:		후송차량 :	
	후송시각:		귀원시각 :	
	후송동행인 :			
후송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진료결과 및 사후관리				
기타 사항		비용 처리		

라 상황별 응급처치

진단명	증 상	17세미만	17세이상
소화불량	속이 답답할 때	소화제 1알	소화제 2알
	오심.구토	가스활명수2/3	까스 활명수 1병
복통 (아랫배, 윗배)	통증 만 있을 때	복부를 따뜻하게 해준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통증	병원후송	
두드러기	음식 알레르기 피부질환 (가려울 때)	코나진, 액티피드 복용 찬물찜질 ▶2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없을경우 병원이송	
늑골통증	숨 쉬기 힘들다	안정유지 후 호전이 안되는 경우 후송	
설사	완전 설사(물 형태)	로프민 복용 17세 미만 1정	
	중간 설사(죽 형태)	로프민 복용17세 이상 2정	
천식	호흡곤란	안정유지	
	안정을 취해도 호흡곤란	병원후송	
간질	발작 있을때	1.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2. 기도유지, 주위의 위험물은 치운다. 3. 조용한 분위기 4.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다.	
생리통	약할 때	복부를 따뜻하게 해준다.	
	심할 때	타이레놀1알 복용	
코피	약할 때	1. 솜뭉치로 막는다(15분정도). 2. 눕혀놓는다.	
	심할 때	피 덩어리로 계속 나오고 멈추지 않을 경우 이비인후과로 후송	
두통	약할 때	눕혀놓는다.	
	심할 때	타이레놀 320mg복용	타이레놀 500mg 복용
치아통증	약할 때	찬 얼음을 수건에 싸서 얼굴에 5분간 둔다.	
	심할 때	타이레놀 반알(250mg) 복용	타이레놀 1알(500mg) 복용
눈이 아플 때	렌즈착용(장시간)	렌즈를 뺀다. 식염수로 자주 씻는다. 눈감고 쉰다.	
	눈곱, 분비물 충혈, 통증	1. 인공눈물 투입 2. 손을 자주 씻는다.	
입술이 갈라진다	입술이 빨갛게 튄다	바세린 연고 발라준다	

마 구급약 및 응급처치 구호설비 현황

비품	쇼파	응접탁자	서랍장	책상서랍	의자	컴퓨터	프린터	PC BOX	스피커	전화기	냉장고	커피포트	전기장판	약장	휴지통	체중계
	4	1	1	1	6	1	1	1	1	1	1	1	3	3	3	1
의료장비	산소통(40L)	침대	칸막이(3단)	소독기	가습기	약포장기	들것	목발	혈당기	혈압기	혈압청진기	이경	드레싱카트	트레이(대)	트레이(중)	트레이(소)
	1	2	1	1	1	1	1	5	1	1	1	1	1	1	2	1
	포셉통	포셉	약주걱	약사발set	전자체온계	수은체온계	구급함	전자레인지	해머	퍼스펜	ambu-bag	ambu-mask	air-way	O2 mask	nasal pr	Hot-bag set
	1	7	4	1	2	4	8	1	1	1	1	2	2	1	1	5
의료자재 및 외용약품	소독약캔(대)	소독약캔(소)	사혈기 / 사혈침	부목 / 복대	손목보호대	발목보호대	경추보호대	팔걸이	손가락붕대	붕대클립	토니켓	Health-Pack	쿨링시트	1회용마스크	알콜솜	cotton ball
	1개	4개	2개 / 통	24개 / 6개	개	개	6개	6개	롤	1개	5개	개	p	p	묶음	묶음
	면봉(200p)	설압자	메디폼	냉각spray	식염수	포타딘	과산화수소	알콜	면반창고 / 3M	종이반창고	알보칠 / 치실	글리세린	거즈 4×4	거즈 2×2	케어가글	바세린거즈
	포	Box	p		병	병	병	병	개 / 개	개	1병 / 2개	5병	BOX	BOX	1병	팩
	붕대6	"붕대4"	붕대3 "	밴드닥터 / 롤거즈	폴리글러브	생리대	메스날 / 소독가위	테이핑테잎	주사기	실마진연고	폴리바마이신	아미드산 / 설파민산	바셀린연고	산클	옵티클 / 에펙신	디스펜서 / 플루액
	개	개	개	BOX / 개	팩	개	7개 / 2개	1개	개	1통	1통	9개 / 2개	1통	개	3개 / 개	2개 / 5통
	카네스텐(100g)	스킨겔	칼라민 / 버물리	세레스톤지	에코론지 / 리카에이	콘트로투벡스	아시클로바	오라메디	티나덱스	보스민액 / 맨소래담	만수고파스	제일파프	킨스(6매)	신신파스	spray pas	베로텍(에어로솔)
	1개	2개	4개 / 개	개	4개 / 개	2개	16개	개	개	6병 / 2병	포	포	포	포	통	5개
내복약품	까스명수	젤콤	쌍화탕	써스펜	이지롱	우황청심원	리보타제	베아제	맥소롱	알드린	라믹스	알마게이트	정로환		디세텔	지르텍
	병	정	병	2병	병	병	정	정	정	포	정	정	정		정	정
	에콜	안코실	액티피드	코데닝	알레드	이부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필라제	엠피스	부스코판	노스콜	청신환	은교산	세티리진	Derma-plast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포	포	정	
	당귀수산	갈근탕	쌍화탕	반하사심탕	배농산급탕	아달라트	비타민C	멜라토닌	식염포도당	미놀트로키	복합쑬기담	삐콤	Co-press	Hy-drosorb comfort	Alu-mium splint 2B	Alu-mium splin-t10A
	g	g	g	g	g	60정	정	정	정	정	정	정			개	개

[표 10-3 응급구호 설비]

바 응급상황 시 대피로

1) 대강당, 국제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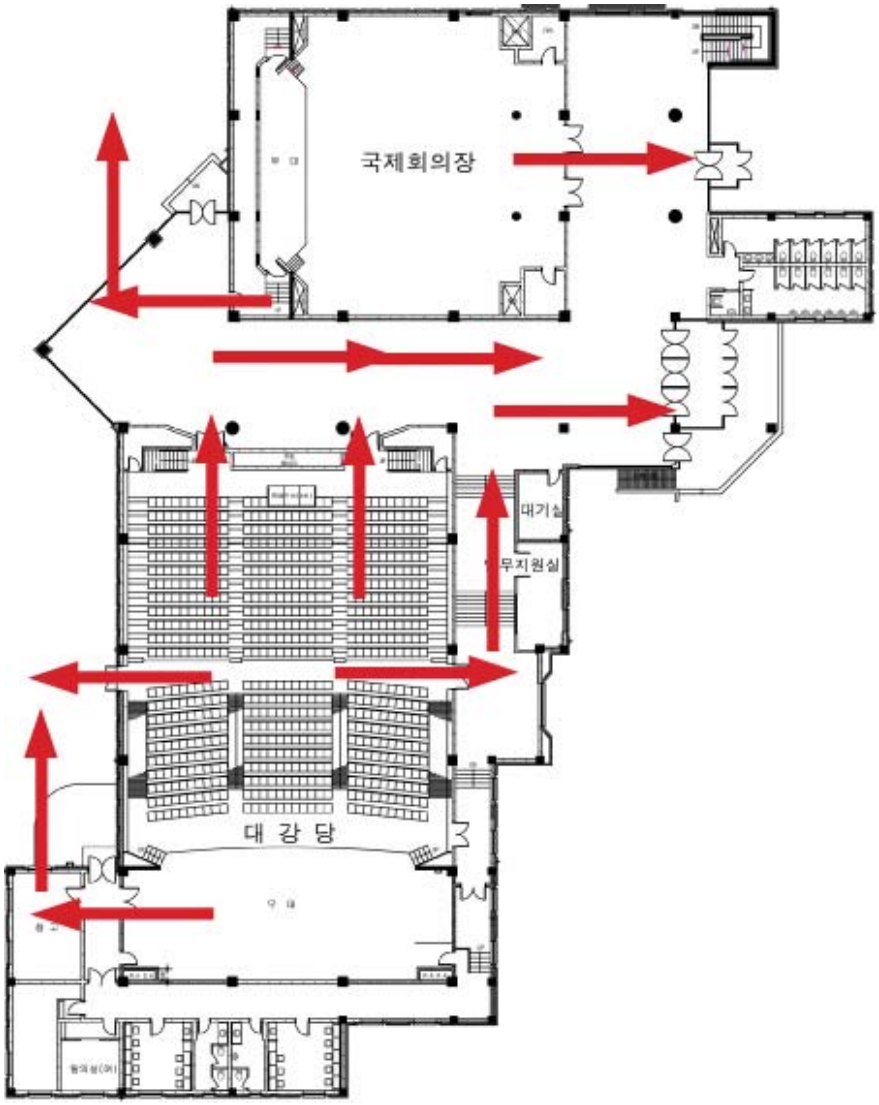

2)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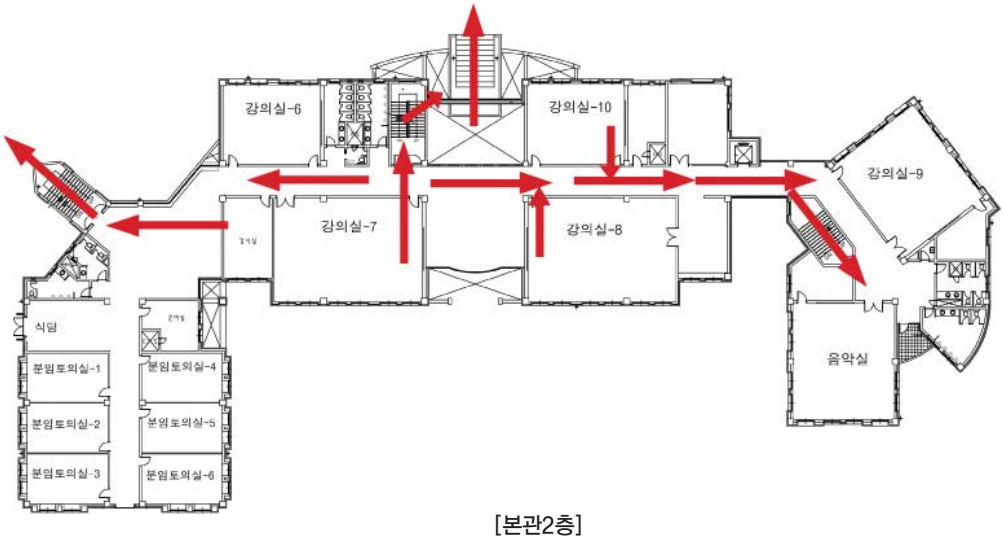

[본관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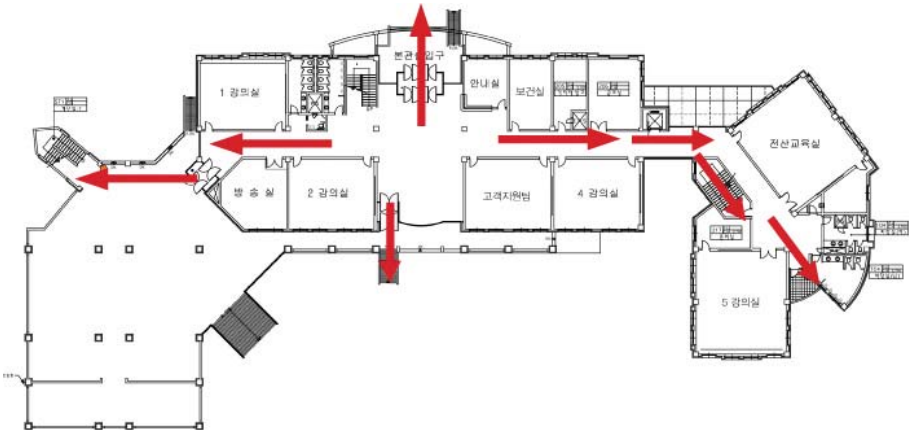

[본관1층]

※ 응급상황 시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 대피함.

5. 청소년 안전교육

◎ 청소년 안전교육

참가자 안전교육은 소지품검사 및 관계형성 시간에 교육되며, 아래와 같이 진행 됨

1) 대　　상 :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초 · 중 · 고 청소년들
2) 실시시간 : 1차 – 소지품검사 및 관계형성 (입소 첫날 14시~15시 / 체육관 및 강의실)
　　2차 – 집합 시 / 각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및 실시 후
3) 교육내용 : 기초생활, 식당예절, 안전사고, 생활관 이용, 취침시간 안내
4) 교육담당자 : 집합 담당 지도자, 각 프로그램 담당지도자, 당직지도자

가. 기초생활교육 : 매 집합 시간마다 메인지도자가 교육

1) 집합 때 시간약속 지키기
2) 몸이 아픈 친구는 인원파악 후 보건실로 이동
3) 인사를 잘하자(볼 때마다,마주 칠 때 마다 즐겁게 인사)
4) 쓰레기 버리지 않기
5) 활동에 적합한 복장 안내(운동화, 기온에 맞는 옷 착용 안내)
6) 분실물 예방교육(귀중품은 담임교사, 생활관에 비치된 귀중품 보관함 안내)

나. 식당 예절 교육 : 식사지도 때 담당지도자가 교육

1) 식당 앞에서는 4줄로 정렬
2) 식사는 먹을 만큼 적당량을 담아서 남기지 않고 섭취
3) 식당 안에서는 뛰지 않는다
4) 식사 후 자기자리는 깨끗하게 정돈 후 의자를 집어 넣는다.
5) 입구와 출구안내
6) 다음 집합시간 안내

다. 안전사고 예방 : 각 프로그램 시작 전 담당지도자가 교육

1) 활동에 적합한 복장 착용(운동화, 바지, 기온에 맞는 복장)
2) 이동 시에 질서를 지켜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3) 활동 중 몸이 불편하면 담당지도자에게 알린 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
4) 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안내

라. 생활관 안내 : 각 프로그램 종료 후 담당지도자가 교육

1) 청소, 정리정돈, 쓰레기 분리수거
2) 귀중품 보관주의
3) 침구류 정리정돈
4) 불편한 점이 있으면 A동 프론트로 접수

5) 정수기 컵이 없을 때는 A동 프론트에서 받기
6) 창문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7) 베개 싸움 주의

마. 취침시간 안내 : 야간 프로그램 종료 후 담당지도자가 교육

1) 샤워실 사용할 때 전기 콘센트에 물이 튀기지 않도록 안내
2) 모든 자유 활동은 21시 55분에 종료
3) 각방 이끔이는 22시에 A동 프론트로 모임
4) 환자는 A동, D동 프론트에서 치료
5) 취침점검 시작시간 22시 30분부터 방간이동 제한
6) 방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은 A동 프론트로 접수

바. 이끔이 교육 : 22시 이끔이 집합 시 당직지도자가 교육

1) 창문을 닫고 커텐을 닫아서 방안의 냉, 난방 온도 유지안내
2) 방안 정리정돈, 쓰레기통 분리수거
3) 신발정리
4) 방안의 사물함, 전구 등 고장이 나서 불편한 부분 신고
5) 부족한 침구류 교환안내
6) 귀중품 보관 유의 안내
7) 환자는 A동, D동 프론트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안내
8) 각 방 점검시간 22시 30분으로 안내

사. 기상시간 교육 : 07시 이끔이 집합 시 당직지도자가 교육

1) 환자 파악
2) 방안 청소, 침구류 정리정돈
3) 식사시간 안내
4) 활동복장 안내(기온에 맞는 옷차림, 운동화 착용)

◎ 기대효과

가. 청소년들에게 30초 기본소양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초질서 의식 함양
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구축
나. 공동체 생활의 마인드와 태도를 습득하여 올바른 미래 시민으로 성장도모
다. 청소년들의 기본생활 태도 개선

6. 표준식단표(2,300 Kcal/일 기준)

	1일	2일	3일
조 식		흰밥 근대된장국 돈육장조림 김구이 시금치무침 김치 요구르트	흑미밥 참치김치국 갈치조림 두부부침/양념장 숙주나물무침 백김치
열량/탄수화물/단백질 (Kcal/g/g)		686.88/102.9/29.0	669.66/104.47/34.69
중 식		차조밥 콩나물무국 돈육불고기 떡볶이 열무김치 방울토마토	율무밥 얼갈이배추된장국 감자조림 탕수육/소스 배추김치
열량/단백질 (Kcal/g)		864.77/130.69/27.65	898/134.1/35.5
석 식	강낭콩밥 버섯찌개 돈육김치찜 미역줄기볶음 야채샐러드 (오리엔탈드레싱)	흰밥 미역국 닭조림 오이도라지무침 잡채 포기김치	
열량/단백질 (Kcal/g)	696.5/95.4/30	796.05/123.8/29.69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70%): 단백질(7~20%), 지방(15~30%)
* 식단표는 식재료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의 식단표 작성 시, 청소년 영양관리기준(한국영양학회,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2010년)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특성, 청소년 연령 및 구성비율을 감안하여 작성

7. 숙박관리

[작성요령 Tip]

⊙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함

⊙ 숙박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 숙박공간

구 분		규 모	비 고
청소년생활관	A동	4인실(58실)	온돌
	B동	8인실(25실)	
	D동	4인실(69실)	

2. 숙박 시설 사진

※ 각 숙박시설의 1층 모습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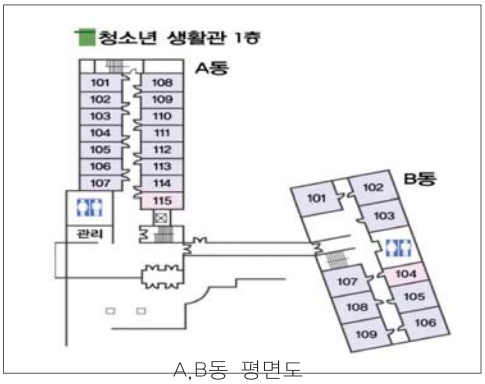

A,B동 평면도

A동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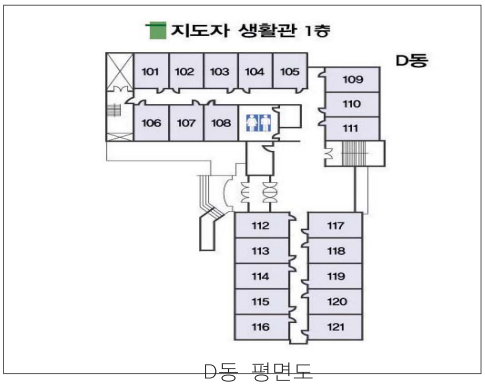

D동 평면도

D동 실내

3. 숙박 관리 지침

1) 근무인원 및 배치

구 분	근무인원	배치	담당업무
A,B동	2명	A동 프론트 및 각 층별 순찰	야간생활지도 및 당직
D동	2명	층별 순찰	

2) 근무시간

▲ 야간 생활지도 근무시간 : 21:00 ~ 익일 09:00

▲ 원의 특성에 따라 야간 당직지도자는 고객지원부의 프론트 근무자가 2교대 근무로 야간당직 운영

3) 근무배정

일 시	활동운영부	고객지원부	담당 업무
1일차		이상훈, 임호일	야간생활지도 및 당직
2일차			

4) 당직근무 지침

▲ 근무인원 및 배치

– 기본적으로 청소년지도자 1인과 생활지도자 2인을 배치한다.

※ 근무인원은 숙박인원, 사용하는 생활관의 수에 따라 조정한다.

– 근무자 중 청소년지도자 1인과 생활지도자 1인은 A동에 배치,
생활지도자 1인은 D동에 배치한다.

※ 근무자의 위치는 숙소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청소년지도자는 가능한 종합적인 청소년지도를 위해 A동에 배치

※ 본관의 야간당직자는 21:00부터 23:00까지 생활관D동에 배치되어 청소년을 지도한다.

– 중등학교(중,고) 청소년들의 생활교육은 가급적 동성지도자가 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도자의 임무

– 참가 청소년의 안전관리

– 야간 생활지도 및 취침지도

– 생활관 수칙 및 이용안내

– 야간 환자관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 익일 아침활동(07:00~07:30) 지도

– 익일 아침식사(07:30~08:30) 지도

– 익일 아침 생활관 정리지도 및 활동준비(08:30~09:00)지도

5) 환자, 응급 ·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 응급 상황 시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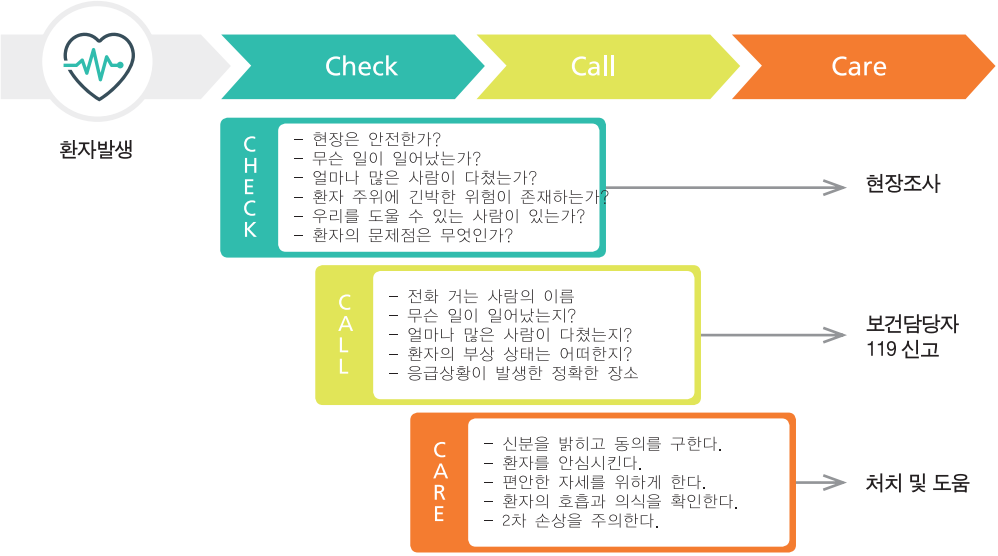

▲ 환자 발생 후송조치

□ 보건담당자의 후송조치에 따라 지정 협력 병원으로 후송

□ 지정 의료기관

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진료시간
충남천안의료원	천안시	570-7200	24시간
천안단국대학교병원	천안시 안서동 산 16-5번지	(응급실550-6843)	24시간

▲ 보건실담당자 부재 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 부장 보고 후 진료기관 선정

□ 환자 인적사항 지정 진료기관에 제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직원임을 밝힘

□ 응급환자후송보고서 작성하여 보건실담당자에게 전달함.

▲ 생활관리

□ 집합 시 교육을 통한 숙소 및 활동 장에서의 질서와 규칙 교육

□ 여가시간(식사 후 자유시간)은 서포터즈 자원을 활용한 생활관 안전 강화

□ 생활관 및 본관 안내 데스크에는 참가자의 민원 및 기타 사항을 신속히 처리 안내 할 수 있도록 내부 직원 항시 배치

□ 야간 취침지도는 각 단체별 인솔자가 1차 확인 후 야간 지도자에게 인계 관리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예시) 인증 프로그램**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운영계획서 미제출)

발급번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 인 증 번 호 : 제 호
- 운 영 기 관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 활 동 명 : (숙박형 - 8박 9일(46.3시간))
- 인증유효기간 : 20 / / ~ 20 / /
- 주요활동장소 :
- 참여대상/인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결과 위와 같이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과 제출 서류는 동일

▶ **추가 양식**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작성예시)**

○ 운영기본정보				
활동명	(직접기입)			
활동기간	(직접기입)			
대상	총 참가자 수	총 인원: 0명	청소년: 0명	청소년 외: 0명
	대상 연령 ☐ 초등학생 연령대 ☐ 중학생 연령대 ☐ 고등학생 연령대 ☐ 기타 (중복 체크 가능)			
활동형태	☐ 고정형 ☐ 이동형 ☐ 혼합형			
운영개요				
영양공급	☐ 도시락	☐ 구내식당	☐ 외부식당	☐ 기타(자체조리 등)
정보공개 방법	☐ 홈페이지 ☐ 오프라인 게시판 ☐ 홍보지 ☐ 기타( ) (중복 체크 가능)			

○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확보			
참가자의 건강상태 확인	확인(예정)일		(직접 기입)
사전안전교육	참가 청소년	교육일시	(직접 기입)
		교육방법	☐ 직접교육 ☐ 시청각자료
		교육내용	(직접 기입)
		교육 담당자	(직접 기입)
	지도자	교육일시	(직접 기입)
		교육방법	☐ 직접교육 ☐ 시청각자료
		교육내용	(직접 기입)
		교육 담당자	(직접 기입)
안전관리방안	이동 중(이동형의 경우)		담당자 및 지도인력: (직접기입)
	프로그램 진행(운영) 중		담당자 및 지도인력: (직접기입)
	취침 시(숙박)		담당자 및 지도인력: (직접기입)
	긴급 후송 체계		(직접기입)
숙박 장소	숙박 장소: ☐ 청소년수련시설(시 설 명) ☐ 비수련시설(시 설 명)		
	안전점검 사항	안전점검 방법	☐ 서류상 확인 ☐ 육안 확인 (중복 체크 가능)
		최근안전점검일	(직접 기입)
		안전관리 담당자 (주최기관)	(직접 기입)

기자재 확보여부	주요활용 장비	장비명	보유형태	보유현황	최근안전점검일
	* 주요프로그램 운영 장비 위주	(직접 기입)	☐ 자체보유 ☐ 임대	0개	(직접 기입)

○ **일정표(붙임)** ※ 일부프로그램 위탁 운영 시, 위탁부분 표기

▶ 일정표

『우리두리같이 캠프』 일정표 (2박3일)

-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 : 17시간
- 프로그램 운영형태 :
  - 자체운영(전체 프로그램 중 73.5% 자체운영 : 12.5h)
  - 프로그램 위탁운영(전체 프로그램 중 약 26.5% 위탁운영 : 4.5h)

시 간	1 일 차	2 일 차	3 일 차
07:00~		기 상 및 숙 소 정 리	
07:30~		아 침 식 사 (담당 : 윤○○)	
09:00~		**공동체 훈련** ▷ 바운드볼 ▷ 거미줄통과 ▷ 구슬나르기 ▷ 인디안놀이 ▷ 협동양탄자 ▷ 카드뒤집기	**미디어여행** 자연산책 칼라리더십 (분반 형태로 운영) [** 관, 201~202호, 자연생태로] 지도자 (박○○ 외 각 1명)
10:00~			
10:30~		[** 관, 201~205호] 지도자 (김○○ 외 2명)	**맺는마당 및 설문작성** [** 관, 105호] 지도자 (김○○ 외 각 1명)
11:00~			
12:00~		점 심 식 사 (담당 : 윤○○)	점 심 식 사 (담당 : 윤○○)
12:30~		**단체사진촬영** [본관정문] (담당 : 김○○)	
13:00~			
13:30~			
14:00~	**도착, 소지품검사,숙소배정** (담당 : 이○○)	**오리엔티어링** **이미지햄투어링** **모둠북** **스네이크보드** **탭댄스** **챌린지**	
15:30~	**여는마당,생활안내,안전교육** [** 관, 105호] 지도자 : 김○○ 외 5명		
16:00~	**만남의 시간**		
17:00~	[** 관, 105호] 지도자 : 김○○ 외 4명	(분반 형태로 운영) [** 관, 201~205호] (지도자 : 정○○ 외 4명)	
17:30~	저 녁 식 사 (담당 : 윤○○)		
19:00~	**천체관측** [천문관 501호 및 옥상] (외부지도자 5인, 내부지도자 2인)	**문화발표** [** 관, 105호] 외부지도자 1인 : 강○○, 내부지도자 2인 : 송○○, 김○○)	
20:30~	**강강술래** / **야간협동** (선택 중 1) [야외운동장] (지도자 각 2인)		
22:00~	휴식 시간, 숙소정리		
22:30~	취침준비 및 취침 (담당 : 이○○)		

05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담당자 연락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시 ·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 역		연 락 처	주 소
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17개 시 · 도)	서 울	02-849-922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부 산	051-852-346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
	대 구	053-659-6213, 6222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종로1가 83-1)
	인 천	032-457-8104, 81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광 주	062-234-0755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3(수기동 5-4번지) 흥사단회관 2층
	대 전	042-488-0732, 07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만년동)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3층
	울 산	070-4454-9705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세 종	044-864-7935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84(고운동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경 기	031-232-9383(2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강 원	033-731-3704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강원(분소)	033-641-399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충 북	043-220-68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도청 제3별관
	충 남	041-562-900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두정동) 진암빌딩 4층
	전 북	063-232-047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 사이언스 2층
	전 남	061-280-906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경 북	054-850-1080~1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 남	055-711-1352,13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
	제 주	064-751-504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7길 4 (이도2동)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안내 매뉴얼

| 주최기관용 |

발간등록관리번호 : KYWA-2018-151-10

인쇄 2018년 11월

발행 2018년 11월

발행인 이광호

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3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층, 5층

Tel 02-330-2850, Fax : 02-6430-0927

인쇄처 세일문화사

Tel 02-2279-6812

※ 사전 승인 없이 책자 내의 무단복제 및 변경을 금합니다.